사학기관 회계기준원 설립·운영 방안 연구

2023년 11월

한국사학진흥재단
Korea Advancing Schools Foundation

사학기관 회계기준원

설립·운영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권선국(경북대학교 명예교수)

연 구 원 : 장지영(창원대학교 강사)

2023년 11월

한국사학진흥재단
Korea Advancing Schools Foundation

목 차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1
3.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 2

Ⅱ. 대내외 환경 및 관련 법령·제도 ····· 3
1. 고등교육 및 사립대학 재정 현황 ····· 3
2. 사립대학 회계·재정 법령 및 제도 현황 ····· 5
3. 선행연구 ····· 11

Ⅲ. 유관기관 도입 사례 분석 ····· 13
1. 미국 사립대학 회계기준 및 제정기관 ····· 13
2. 일본 사립대학 회계기준 및 제정기관 ····· 22
3. 한국회계기준원 ····· 31
4.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 43
5. 지방회계통계센터 ····· 55
6. 국내 사례 요약 및 시사점 ····· 64

Ⅳ. 사학기관 회계기준원 설립·운영(안) ····· 67
1. 설립 취지 ····· 67
2. 설립 근거 및 방안 ····· 69
3. 수행 역할 ····· 72
4. 조직구성 ····· 76
5. 예산 ····· 79
6. 기대 효과,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방안 ····· 80

<참고문헌> ····· 82

표 목 차

<표 1> 사학기관 재무 ·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 · 개정 연혁 ····· 7
<표 2> 사학기관 재무 ·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주요 개정 사항 ····· 8
<표 3> 미국 사립대학의 재무 보고 규정 ····· 19
<표 4> 미국 사립대학과 공립대학의 회계기준 차이 ····· 21
<표 5>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로드맵 ····· 45
<표 6> 국가회계기준센터 조직(안)(2010년 설립 시) ····· 47
<표 7> 국가회계기준센터 운영에 관한 입찰공고문 ····· 51
<표 8> 국가회계기준센터의 2010년 예산 세부 내역 ····· 52
<표 9>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연혁 ····· 54
<표 10> 지방회계통계센터 조직 및 기능(2016년 4월 기준) ····· 60
<표 11> 지방회계통계센터 2015년도 예산(8개월분, 2015.5 ~ 12월) ····· 63

그 림 목 차

<그림 1> FASB의 ASC 검색 화면[산업-비영리실체(NPE: Not-for-Profit Entities)로 검색] · 16
<그림 2> FASB, GASB, NACUBO의 관계도 ····· 17
<그림 3> 재무 보고 비교 ····· 18
<그림 4> 재무상태표 구성 양식 비교 ····· 20
<그림 5> 한국회계기준원 조직도 ····· 39
<그림 6>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조직도(2023년 11월 현재) ····· 49
<그림 7>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조직도 ····· 61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사학기관 재정회계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으로 사학기관 재정회계 투명성 확보는 감독기관(교육부), 정보제공자(대학), 정보이용자(국회, 학생, 학부모 등)에게 모두 필요한 사항임

○ 사학기관 재정회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학기관 재정회계 투명성 확보 정책 제도화 및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 증가

○ 명확한 사학기관 회계기준의 부재로 관련 전문기관 설립의 필요성 증대

○ 사학기관 중 사립대학에 대한 외부감사 및 외부감사에 대한 감리 의무화로 사립대학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강화되었으나, 세밀한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여 대학 현장에서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축적해 온 사립 고등교육 재정정보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학 고등교육 회계기준을 시의적절하게 제·개정 및 지원하는 전문기관(사학기관 회계기준원) 설립 필요

제2절 연구 목적

○ 사학기관 중 사립대학 재정회계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투명성 제고가 시급하므로 사학기관 회계기준원 설립·운영을 통해 사립대학 재정회계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사립대학 재정회계에 대한 사전적 투명성은 회계기준의 합리적 제정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음
- 사립대학 재정회계에 대한 사후적 투명성은 회계기준의 적용에 대한 실태조

사, 외부 회계감사 및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를 통해 달성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축적해 온 사학 고등교육 재정정보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학기관 회계기준원을 한국사학진흥재단 내에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제3절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 한국사학진흥재단 내에 사학기관 회계기준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을 포함함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대내외 환경 및 관련 법령·제도 검토
- 미국과 일본의 사립대학 회계기준 및 제정기관 검토
- 한국회계기준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지방회계통계센터 등의 유관기관 도입 사례 분석
- 설립 취지, 설립 근거 및 방안, 수행 역할, 조직구성, 예산, 기대 효과,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방안 등의 사학기관 회계기준원 설립·운영(안) 제시

○ 연구 방법

- 문헌 연구로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
- 미국과 일본의 사학기관 대상 회계기준 운영 사례 조사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
- 한국회계기준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지방회계통계센터의 설립 및 운영 사례 조사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

제2장 대내외 환경 및 관련 법령·제도

제1절 고등교육 및 사립대학 재정 현황

○ 대학 고등교육 재정 현황[1)]

-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부문에 초·중등교육보다 과소 투자하고 있음. 그 반면에 OECD 회원국은 대부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초·중등교육보다 고등교육에 더 많게 투자하고 있음
- 2020년 학자금지원을 제외한 실질 고등교육예산은 11.9조 원으로 GDP 대비 0.61% 수준이며, 전체 교육예산 대비 15.85%임
-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전체 교육예산은 증가추세를 보이나 학자금을 제외한 실질 고등교육예산은 증가추세가 미미하며, 전체 교육예산과 고등교육예산과의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임
- 교육부 소관 전체 교육예산에서 고등교육예산 비중은 2011년 대비 2022년 0.8%p 증가하였으나, 학자금지원을 제외한 실질 고등교육예산 비중은 0.4%p 감소하였음
- 2022년 교육부 소관 실질 고등교육예산 규모는 3조 9,798억 원으로 전체 교육예산 대비 12.8%이나, 학생 개별 복지비용인 국가장학금과 국립대학 경상운영지원비를 제외한 실질 고등교육예산은 교육부 예산 대비 4.0%에 불과함
-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비는 지원 대상별 대학 6.7조원(47.5%), 개인(학생 및 연구자) 5.9조원(41.3%), 집단(사업단) 1.6조원(11.2%) 순임. ‘대학’ 지원사업비의 63.3%가 경상 운영 지원사업비로, 각 부처별 소속 대학(교)에 대한 지원비임. ‘개인(학생 및 연구자)’ 지원사업비의 68.6%가 HRD(인력양성) 사업비이며, 이 중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학생에 대한 학자금지원 사업비가 99.3%임. 따라서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비 중 대학 교육에 투자되는 ‘일반지원사업비’ 규모는 2.5조원(17.3%)에 불과함
-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 수준에서의 직접적인 투자 비용 확대가 필요함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 포커스 제2호,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 현황분석, 2022.11.

○ 사립대학 재정 현황[2)]

- 사립대학교의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실질 운영수익은 14.6조 원 내외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
- 사립대학교의 운영수익 합계는 2011년 14.9조 원에서 2021년 16.7조 원으로 1.8조 원(1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실질 운영수익은 오히려 감소(710억원)한 것으로 확인됨
-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은 2011년 11.1조 원에서 2021년 10.2조 원으로 8,547억 원(7.7%) 감소함
- 2021년 국고보조금은 3조 1,795억 원이지만, 국가장학금 2조 2,107억 원을 제외한 실질 국고보조금은 9,688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운영비용 중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의 경우 인건비는 증가추세로 2011년 대비 2021년 11,163억 원(16.7%) 증가하였고, 관리운영비는 2011년 대비 2021년 1,686억 원(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실질 운영수익 대비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의존율은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며, 인건비와 관리운영비와 같은 경상 경비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2021년 기준 75.9%로 나타남
- 사립대학교의 연도별 운영 손익 분석 결과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부터 운영수지 적자를 나타냄
- 사립대학교의 '교육을 위한' 재정 투자 규모는 최근 10년간 지속적 감소 추세임
- 운영수지 적자에서 벗어나고, 대학의 '교육을 위한'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국가 수준에서의 안정적 재정 확충 및 지원이 필요함
- 국가의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 결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사립대학에 대한 회계·재정정보가 산출·보고되어야 함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 포커스 제3호, 사립대학교 재정 운영 현황분석, 2022.11.

제2절 사립대학 회계·재정 법령 및 제도 현황

○ 사학기관의 회계 구분

- 「사립학교법」 제29조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함
-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校費會計)와 부속병원 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함
-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음

○ 회계·재정 제도

- 「사립학교법」 제31조제1항은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학기관은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예·결산, 기본재산 운영과 관련한 각종 규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회계처리 오류 현장 자문 등 재정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사립대학에 대한 예·결산 및 기본재산 실태점검을 수행하고 있음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2022년 60개 사립대학에 대한 예·결산 및 기본재산 실태점검 결과, 총 644건의 지적 사항이 발견되었음. 유형별로는 결산 관련 360건, 예산 관련 125건, 시설·재산 관련 115건 등이었음[3)]
- 예·결산 및 기본재산 실태점검에서 계속적으로 다수의 지적 사항이 발견되는 이유로는 사학기관의 규정에 따르지 않는 집행뿐만 아니라 회계기준 자체의 불명확성도 지적됨

3) 한국사학진흥재단, 2022, 사학기관 예·결산 및 기본재산 실태점검 사례집

○ 회계기준

- 「사립학교법」 제33조는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기타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사립학교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제정되었음. 따라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사립학교의 재무와 회계에 관한 기본 규정으로 모든 사립학교에 적용됨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 함)은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특성에 맞는 예산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이 규칙은 사립의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사이버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적용됨
- 특례규칙은 학교의 교비회계와 법인의 일반업무회계에 적용됨
- 학교의 부속병원 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인의 병원회계에 준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법인의 수익사업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에 준하여 회계처리를 함
- 특례규칙은 기본적으로 복식부기를 전제로 하여 구성되어 있지만 기업회계기준상의 복식부기와 차이가 있음. 중요한 차이점은 예산회계제도를 전제로 하는 점, 수익 인식에 있어서 예산회계를 기초로 하고 있어 현금주의에 근접한 수정된 발생주의를 적용하는 점 등임. 또한 특례규칙이 예산회계제도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특례규칙에, 회계에 관한 규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음
- 보통 사립대학의 회계기준이라 할 때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의미함
- 특례규칙은 1981년 제정 후 20차례 개정되었으나(<표 1> 참조), 1996년 한 번만 전면 개정되고 19번은 일부개정 또는 타법 개정이었음
- 특례규칙의 회계기준 자체의 실질적인 전면 개정은 제정 이후에 없었음(<표 2> 참조)

<표 1>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ㆍ개정 연혁

번호	시행령 호	시행일자	개정일자	개정방법
1	문교부령 제489호	1981. 03. 01.	1981. 02 .28.	제정
2	문교부령 제554호	1987. 02. 06.	1987. 02. 06.	일부개정
3	교육부령 제594호	1991. 03. 16.	1991. 03. 16.	타법개정
4	교육부령 제679호	1996. 03. 01.	1996. 02. 29.	전부개정
5	교육부령 제735호	1999. 01. 29.	1999. 01. 29.	일부개정
6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2001. 01. 31.	2001. 01. 31.	타법개정
7	교육부령 제735호	2001. 03. 01.	1999. 01. 29.	일부개정
8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2001. 03. 01.	2001. 01. 31.	타법개정
9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65호	2006. 01. 01.	2005. 09. 27.	일부개정
10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91호	2006. 08. 02.	2006. 08. 02.	일부개정
11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 03. 04.	2008. 03. 04.	타법개정
12	교육과학기술부령 제46호	2010. 03. 01.	2009. 12. 22.	일부개정
13	교육부령 제1호	2013. 03. 23.	2013. 03. 23.	타법개정
14	교육부령 제63호	2014. 03. 06.	2014. 03. 06.	일부개정
15	교육부령 제96호	2016. 04. 20.	2016. 04. 20.	타법개정
16	교육부령 제158호	2018. 05. 29.	2018. 05. 29.	일부개정
17	교육부령 제188호	2019. 09. 17.	2019. 09. 17.	타법개정
18	교육부령 제217호	2020. 09. 25.	2020. 09. 25	일부개정
19	교육부령 제224호	2021. 01. 06.	2021. 01. 06.	일부개정
20	교육부령 제240호	2021. 06. 30.	2021. 06. 30.	타법개정
21	교육부령 제303호	2023. 06. 01.	2023. 05 .31.	일부개정

<표 2>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주요 개정 사항

일 자	주요 개정사항
1987년 2월 6일 (일부개정)	- 기본금 및 적립금에 관한 회계처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개정 - 사학기관의 재무·회계와 관련된 계정과목을 일부 조정
1991년 3월 16일 (일부개정)	- 타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등
1996년 2월 29일 (전부개정)	- 예산의 부속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편성의 실효성 및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 - 법인회계 및 학교 회계의 예산 및 결산을 공개하도록 개정 - 법인수익사업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변동 예산 도입 - 학교의 회계는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처리하고 기간별 비교를 위해 일관된 회계원칙의 준수를 규정 - 재무상태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자산 및 부채의 분류기준 및 계리원칙을 정함 - 운영수익을 순액에서 총액표시로 하도록 하고, 운영비용의 구분 및 표시방법을 개정 -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종합적인 자금수지, 재무상태 및 운영수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종합재무제표 및 합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구성서류 및 작성방법을 정함
1999년 1월 29일 (일부개정)	- 사립 전문대학의 재정규모 증대로 인해 종전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서 특례규칙을 적용하도록 개정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함
2001년 1월 31일 (일부개정)	- 타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등
2005년 9월 27일 (일부개정)	- 사학기관의 주요 예산내역과 결산내역을 일정기간 당해 학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개정
2006년 8월 2일 (일부개정)	- 예·결산서에 공개에 대한 사항에 대한 법률체계변경에 따른 개정
2008년 3월 4일 (일부개정)	- 타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등
2009년 12월 22일 (일부개정)	- 감가상각제도의 도입 -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 - 투자유가증권의 시가평가 - 상기 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
2014년 3월 6일	-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 - 투자유가증권 시가평가손익을 기본금조정으로 처리

일 자	주요 개정사항
2016년 4월 20일	- 타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서식 변경 등 (개인정보보호 및 서식 설계기준에 맞추어 서식 변경) (구비서류 → 첨부서류)
2018년 5월 29일	- 부속병원회계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인의 병원회계에 준하여 회계처리 - 수익사업회계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에 준하여 회계처리 - 투자결과의 보고 시기 및 방법
2019년 9월 17일 (일부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수불명세서 → 출납명세서)
2020년 9월 25일 (일부개정)	-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일반기부금을 법인회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교회계로만 처리하도록 함
2021년 1월 6일 (일부개정)	- 법인회계 예산안의 이사회 제출기한을 학교회계 예산안의 제출기한과 동일하게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으로 변경함 - 취득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고정자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할 수 있도록 함 - 예산부속명세서에 적립금 운용계획서(명세서)를 신설
2023년 5월 31일 (일부개정)	-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명칭 변경함 - 예산편성요령 작성을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에서 '예산안 편성 전'까지로 함

출처: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2019, pp. 25-26(일부 수정).

- 현재 사립대학 회계기준의 개정 업무는 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으며, 사립대학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응답은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회계센터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음

○ 외부회계감사

-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에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그 학교법인의 감사 모두가 서명·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제5항에 따른 학교법인은 제외한다)은 직접 선임한 학교법인과 독립한 외부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이하 "외부감사보고서"라 한다)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위 조항에 따라 사립대학은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보고서를 결산 보고시 첨부하여야 함
- 「사립학교법」 제31조제5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선정한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호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직접 선임한 학교법인과 독립한 외부감사인
  2. 제1호에 따른 회계연도 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 이 경우 동일한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한다.
- 사립대학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위 조항에 따라 현재 지정감사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외부회계감사 및 지정감사제도는 사립대학 재정회계에 대한 사후적 투명성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임

○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 「사립학교법」 제31조의2제1항에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감리(監理)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위 조항에 따라 현재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사립대학 외부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4]를 수행하고 있음
- 사립대학 재정회계에 대한 사후적 투명성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임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2022년 60개 사립대학에 대한 회계 감리 결과, 총 633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음. 유형별로는 재무제표 오류 398건, 주석공시 오류 140건, 법령위반 74건 등이었음[5]

4) 사립대학 감사보고서 감리란 사립대학이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해 실시하는 감리를 말함
5) 한국사학진흥재단, 2022,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사례집

제3절 선행연구

○ 사립대학 회계기준서 연구(삼일회계법인, 2013)

- 사립대학과 관련한 다수의 이해관계자 및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적정하고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서 학교법인에 적합한 별도의 회계기준을 마련함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적용에 준거가 될 수 있는 ‘사립대학회계기준’을 제안함

○ 대학재정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권선국, 2016)

- 대학재정회계센터 구축을 통해 대학재정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이관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정보 분석시스템 운영사업’ 수행을 반영하고자 함
- 한국사학진흥재단 내에 대학재정회계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함
- 대학재정회계센터의 업무로 국립대학 회계기준 및 회계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사립대학 회계기준 및 회계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산학협력단 회계기준 및 회계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학의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활용, 대학 재정통계 지원 등을 제시함

○ 사학기관 회계기준에 관한 연구(연구책임자 김우영, 2017)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특례규칙, 국립대학 회계기준 및 비영리조직회계기준 분석으로 사립대학 회계기준 개선
- 사립대학 회계기준 개선에 따른 법률 개정사항 검토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조화방안(연구책임자 권선국, 2021)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아닌 재무회계규칙과 특례규칙을 적용하도록 허용되고 있음. 이로 인해 학교법인의 재무정보와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한 공익법인의 재무정보를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단기 및 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함
- 단기적 조화 방안으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함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장기적 조화 방안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사학기관회계기준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함. 즉,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사학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하고,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여 새로운 기준을 제정하는 것임. 이 경우 특례규칙의 예산에 대한 조항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에 관한 규정/지침이 제정될 필요가 있음

제3장 유관기관 도입 사례 분석

제1절 미국 사립대학 회계기준 및 제정기관

1. 미국 사립대학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법적 근거

○ 미국은 비영리조직(NPO: Non-Profit Organization) 유형별로 적용되는 회계지침을 달리 정하지 않고 있으며, NPO 전반에 대한 회계기준서를 제정하여 이를 모든 NPO에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미국 사립대학에만 적용되는 회계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NPO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이 미국 사립대학에도 적용됨

○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는 1960년대 중반부터 NPO의 회계기준을 체계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회계기준을 정립하려는 노력을 경주

- 이에 따라, 1979년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정부를 제외한 모든 NPO의 회계 및 재무보고 기준을 정립할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됨
- 반면, 정부의 경우에는 정부회계기준위원회(GASB: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회계 및 재무보고 기준을 정립할 권한과 책임을 보유
- 이에 미국의 사립대학은 FASB의 기준서를 공립대학은 GASB의 기준서를 대학회계기준의 준거로 활용
- 이후 FASB는 1979년 재무회계기준서 32(SFAS: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No. 32)를 필두로 NPO의 회계 및 재무보고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를 수행해 오다 1993년 6월 SFAS No. 116과 SFAS No. 117을 공표하여 민간 비영리 조직에 적용되는 회계 및 재무보고기준을 마련함

2. 미국 사립대학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역사

○ 1979년 FASB가 정부를 제외한 모든 NPO조직의 회계 및 재무보고 기준을 정립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이후로 미국사립대학의 경우에 FASB에서 발간한 SFAS가 회계처리의 기준이 되었음

- FASB의 SFAS는 2009년 168번까지 제정되었고, 2009년 9월부터 회계기준 규범(ASC: Accounting Standards Codification)으로 변경
- ASC는 미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을 약 90개의 회계 주제로 재구성한 것임

○ 반면 NPO와 영리기업의 수익구조와 기업환경 등이 상이함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NPO에만 적용되는 회계기준이 제정됨

- SFAS No. 32[6] '회계 및 감사 문제에 대한 미국공인회계사의 입장 및 실무지침과 전문적인 회계기준과 재무보고원칙' 발간(1979.09)
- 동 기준서는 NPO에 대한 회계기준의 관행으로 기존에 존재하던 AICPA의 SOP(Statement of Position) 78-10[7]과 AAG(Audit and Accounting Guide)를 잠정적으로 NPO에 대한 공식적인 회계기준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이후 AICPA는 SOP 94-3[8]과 SOP 98-2[9]를 추가로 발표

○ SFAC No. 4[10] '재무회계개념 보고서 4' 발간(1980.12), SFAC No. 6[11] '재무회계개념 보고서 6' 발간(1985.12)

- 동 보고서에서는 NPO에 대한 재무보고와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NPO에 대한 회계 및 재무보고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FASB의 노력 일환임

---

6) Specialized Accounting and Reporting Principles and Practices in AICPA Statements of Position and Guides on Accounting and Auditing Matters—An Amendment of APB Opinion No. 20
7) Accounting Principles and Reporting Practices for Certain Non-Profit Organizations
8) Reporting of Related Entities by Not-for-Profit Organizations
9) Accounting for Costs of Materials and Activities of Not-for Profit Organizations and State and Local Government Entities that Include Fund Raising
10)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Concepts No. 4
11)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Concepts No. 6

○ SFAS No. 93[12] ‘NPO의 감가상각 인식’ 발간(1987.08)

- 동 기준서에서는 NPO가 보유 중인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인식에 대한 기준과 감가상각 정보의 공시를 다루고 있음
- 또한 연이어 발간된 SFAS No. 99[13](1988.09)에서는 NPO의 감가상각 인정 효력발생일 연기에 대한 개정 내용을 다루고 있음

○ SFAS No. 116[14] ‘기부금의 회계처리’ 발간 및 SFAC No. 117[15] ‘NPO의 재무제표’(1993.06)

- SFAS No. 116에서는 NPO의 주된 수입원인 기부금과 관련된 회계처리 기준(기부금 수익인식 기준)을 기부자 및 수증자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으며, SFAS No. 117에서는 NPO의 재무제표의 내용 및 구성을 다루고 있음
- 이를 통해 민간 NPO에 적용되는 회계 및 재무보고기준의 기틀을 마련함

○ SFAS No. 124[16] ‘NPO의 투자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발간(1995.11)

- 동 기준서에서는 NPO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산의 회계처리 기준을 다루며, 구체적으로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에 대한 회계처리와 이의 공시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음

○ SFAS No. 136[17] ‘NPO로의 자산이전 또는 타기관을 위한 공익신탁’ 발간(1999.06)

- 동 기준서에서는 NPO가 기부자로부터 수증하는 자산이전과 관련한 회계처리와 공익신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 SFAS No. 164[18] ‘NPO의 기업인수합병’ 발간(2009.05)

- 동 기준서에서는 NPO의 기업결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

12) Recognition of Depreciation by Not-for-Profit Organizations
13) Deferral of the Effective Date of Recognition of Depreciation by Not-for-Profit Organizations—an amendment of FASB Statement No. 93
14) Accounting for Contribution Received and Contribution Made
15) Financial Statements of Not-for-Profit Organizations
16) Accounting for Certain Investment held by Not-for-Profit Organizations
17) Transfers of Assets to A Not-for-Profit Organizations or Charitable Trust that Raises or Holds Contributions for Others
18) Not-for-Profit Entities: Mergers and Acquisitions—Including an amendment of FASB Statement No. 142

○ SFAS가 ASC로 변경된 이후에는 NPO에 대해 적용되는 회계기준은 90개의 각 회계기준에서 검색가능함

- 자산, 부채, 자본의 주제별 검색도 가능하며, 산업별 분석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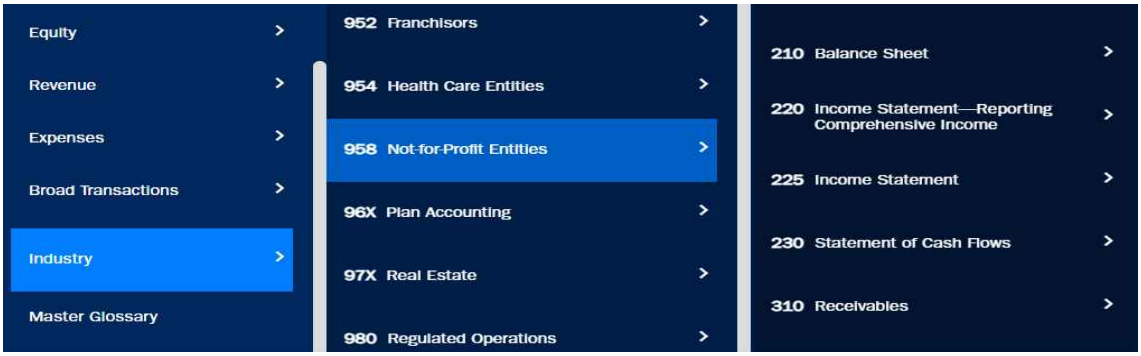

출처 : https://asc.fasb.org/1943274/2147480897

<그림 1> FASB의 ASC 검색 화면[산업-비영리실체(NPE: Not-for-Profit Entities)로 검색]

3. 미국 사립대학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제정기관

○ 사립대학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공립대학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제정기관이 서로 상이함

○ 정부형 NPO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은 GASB에 의해 제정되고 민간형 NPO에 대한 회계기준은 FASB에 의해 제정됨

- 따라서, FASB는 사립대학의 회계 및 재무보고 기준을 제정하고, GASB는 공립대학의 회계 및 재무보고 기준을 제정하나 두 회계기준은 거의 유사한 편임
- 또한 대학경영관리자전국협회(NACUBO: National Association of College and University Business Officers)에서 대학 회계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여 공표함

○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

- 1973년에 설립된 민간 NPO로 공기업 및 사기업 그리고 NPO에 적용되는 재무회계 기준과 재무보고 기준을 제정하는 단체
- FASB에 의해 제정된 회계기준은 미국 증권거래소, 미국공인회계사회 등으로부터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음

○ 정부회계기준위원회(GASB)

- 1984년에 설립되었으며,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산하기관들이 재무보고를 할 때 채택하는 재무보고 기준을 규정
- GASB에 의해 제정된 회계기준은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 등으로부터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음

○ 대학경영관리자전국협회(NACUBO)

- NACUBO는 1962년에 설립되었으며, 대학경영자들에게 대학 경영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 미국 전역 및 전세계 1,700여개 이상의 대학 및 고등교육서비스 제공 기관이 소속되어 있으며, 대학들의 각종 이해관계를 대변
- NACUBO 內에 대학회계에 관련되는 사항을 정리하여 공표하는 자발적 위원회인 회계원칙협의회(APC: Accounting Principles Council)가 있음
- APC는 회계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회원사 소속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FASB 및 GASB의 상임위원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출처 : Finance and Accounting for Higher Education Administrator : The information you need to be successful in non-financial roles, AACSB 2022.

<그림 2> FASB, GASB, NACUBO의 관계도

4. 미국 사립대학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개요

1) 재무보고기준

○ 미국 대학의 경우 기본적으로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재무보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or Net Position), 재무 성과를 측정하는 활동보고서(Statement of Activities), 현금의 원천 및 사용에 관한 현금흐름표(Statement of Cash Flows),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주석(Footnotes)
- 주석의 경우에 공립대학은 재무상황과 재무 실적에 대한 경영진의 의견서(MD&A: Management`s Discussion and Analysis of financial condition and results of operation)를 작성하여야 하나, 사립대학은 기능별 비용 및 관리비의 내역을 세부적으로 공개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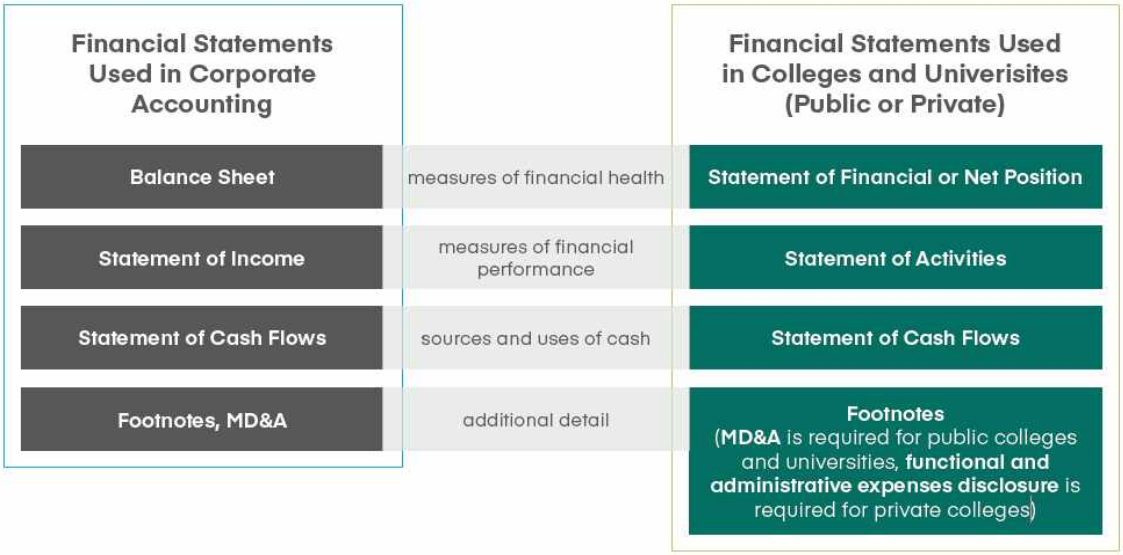

출처 : Finance and Accounting for Higher Education Administrator : The information you need to be successful in non-financial roles, AACSB 2022.

<그림 3> 재무보고 비교

○ 미국 대학들의 재무보고에 있어, 비영리 사립대학들은 FASB를, 공립대학들은 GASB를 각각 따름으로 인해 재무보고 기준에 차이가 존재

- FASB의 목적은 자원을 제공하는 측이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GASB는 재정보고를 통해 조직 구성원들 및 나아가서는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러한 기본 목적의 차이로 인해 다음과 같이 FASB와 GASB의 재무보고에 차이가 존재[19)]

<표 3> 미국 사립대학의 재무보고 규정

구 분	사립대학(FASB 준용)
MD&A	○ 작성 필요 없음(GASB에서는 작성 요구)
재무상태표	○ 구분표시 요구 사항 없음(GASB에서는 유동성 구분 요구) ○ 순자산을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자산별로 구분표시 - 제한 없는(Unrestricted) 자산 - 일시적 제한(Temporarily restricted) 자산 - 영구적 제한(Permanently restricted) 자산 ○ 자본자산 표시에 특별한 요구 사항 없음
현금흐름표	○ 직접법, 간접법 허용(GASB에서는 직접법만 허용) ○ 3가지 활동으로 구분 -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활동보고서	○ 모든 비용을 허용 ○ 운영성과는 자체적으로 측정하며, 선택사항임

출처 : Hanover Research, Financial Reporting in Higher Education(2014) 참고

- FASB SFAS No. 116, No, 117에 의거 사립대학의 경우 재무보고시 1) 총자산, 부채, 그리고 순자산의 규모, 2) 순자산의 변화 3) 현금과 자산의 변화를 보고하여야 하지만, 공립대학은 GASB의 회계규정 34항[20)] 및 35항[21)]에 의거 재무보고시 순자산, 투자된 자산, 부채, 그리고 수입, 지출, 순자산의 변화를 보고하여야 함

19) Gordon, T., Fischer, M., Malone, D. & Tower, G. (2002). A comparative empirical examination of extent of disclosure by private and public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21.
20) Basic Financial Statements and Management's Discussion and Analysis for State and Local Governments
21) Basic Financial Statements and Management's Discussion and Analysis for Public Colleges and Universities

○ 사립대학의 재무상태표는 공립대학의 재무상태표와 그 명칭과 표시가 상이함

- 일반적으로 공립대학과 정부는 '순포지션(Net Position)'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나, 사립대학은 '순자산(Net Assets)'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함
- 일반적으로 사립대학은 '자산=부채+자본'의 회계등식을 이용하나, 공립대학은 '자산-부채=자본'의 등식을 활용하여 재무상태표를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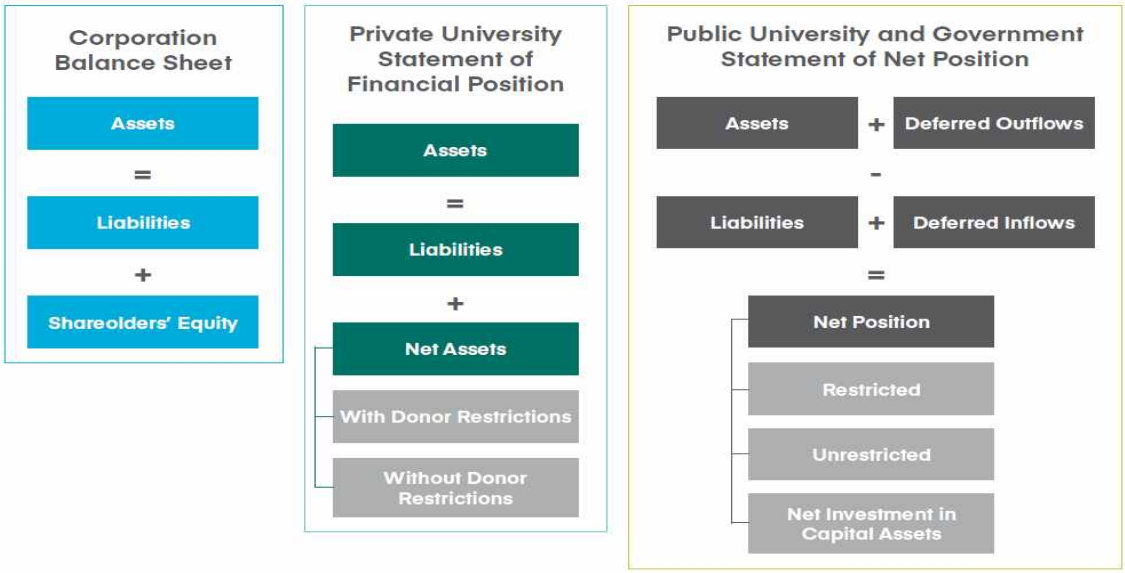

출처 : Finance and Accounting for Higher Education Administrator : The information you need to be successful in non-financial roles, AACSB 2022.

<그림 4> 재무상태표 구성 양식 비교

2) 회계기준

○ 사립대학과 공립대학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차이는 두 기관의 '임무 차이(Mission Difference)' 로 인해 발생

○ 사립대학의 회계기준은 투자자와 채권자에게 사립대학의 재무상태를 교육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제정되며, 공립대학의 회계기준은 정부자금으로 제공되는 공공자금과 세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

- 이러한 두 기관 임무의 차이로 인해 회계기준 제정 목적에 차이가 존재하게 되며, NACUBO는 다음과 같이 두 기준 간의 차이를 분석

<표 4> 미국 사립대학과 공립대학의 회계기준 차이

구분	사립대학(FASB 준용)	공립대학(GASB 준용)
기부서비스[22] (Contributed Services)	인식 허용	인식하지 않음
사용이 제한된 기부금 (Restricted Cash Contributions)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된 것으로 인식	이연수익으로 인식
기부서약 (Endowment Pledges)	영구적으로 제한된 것으로 인식	인식하지 않음
투자이익 (Investment Income)	영업이익이나 비영업이익으로 인식	학생대출프로그램 이외에는 영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연방정부장학금 (Pell Grants)	대차대조표 반영	활동보고서 반영
학자금대출 (Perkins Loans)	대차대조표 반영	대차대조표나 활동보고서 반영
타인신탁자금 (Funds Held in Trust by Others)	자산에 포함	인식하지 않음
제한사항 정의 (Restrictions Definition)	기부 당사자만 제한 가능	모든 외부이해관계자에 의한 제한 가능
연금 및 퇴직 후 복지 (Pensions and Other Post-Retirement Benefits)	FASB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일관성 있게 비용 및 부채로 인식	GASB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일관성 있게 비용 및 부채로 인식
소프트웨어 (Software)	자본화 대상	자본화하지 않음
손상 (Impairment)	현금흐름 접근법 적용	사용접근법 적용

출처 : Hanover Research, Financial Reporting in Higher Education(2014) 참고

22) 의사, 간호사, 변호사 또는 회계사가 기부하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의미

제2절 일본 사립대학 회계기준 및 제정기관

1. 일본 사립대학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법적 근거

○ 일본의 사립대학의 회계기준은 문부과학성령(文部科學省令) 제18조에 의해 규정된 “학교법인회계기준”임

- 학교법인회계기준의 제1조에 따르면, 「사립학교진흥조성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학교법인은 문부과학대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와 재무계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의 사립대학의 결산과 관련된 법률의 근거는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진흥조성법」으로, 이들 법률에서는 모두 “문부과학대신이 정한 기준”이라는 규정을 두고, 이를 법적 근거로 학교법인회계기준이 문부과학성령으로 공포됨

○ 일본의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매 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해야 함

- 사립학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사업보고서 및 임원명부를 작성하여(「사립학교법」 제47조제1항), 감사보고서와 함께 각 사무소에 비치하고, 당해 학교법인의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청구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사립학교법」 제47조제2항)
- 결산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법인회계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사립학교법 시행규칙」 제4조의4)
- 일본의 사립대학은 1975년의 「사립학교진흥조성법」의 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로부터 지급되는 보조금 산출금액의 기초를 얻기 위하여 문부과학성령으로 규정된 “학교법인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및 재무 서류를 작성해야 함
- 「사립학교진흥조성법」 제14조에 따르면, 보조금을 교부받는 학교법인은 문부과학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및 그 밖의 재무계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처럼 “학교법인회계기준”은 「사립학교법」과 「사립학교진흥조성법」의 규정을 만족시키는 결산서의 작성기준으로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2. 일본 사립대학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역사

○ 학교법인회계기준의 제정 이전

- 일본은 1949년 「사립학교법」을 제정하여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으나, 1971년 학교법인회계기준이 제정되기까지 사립학교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화된 회계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짐
- 1960년대 이후,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대학 진학 수요가 증가하고 고등교육이 대중화되면서, 일본 사회 내 사립대학의 중요성이 인식되었지만, 사립학교 단독 재정만으로는 어려움을 겪음
-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법인에 대한 재무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68년 문부성내에 "학교법인재무기준조사연구회"를 설치하고, 검토를 시작함
- 검토의 결과, 1970년에 위의 조사연구회가 학교법인회계기준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법인의 재무기준에 대해서"라는 보고를 문부성에 제출함

○ 일본 「사립학교진흥조성법」과 학교법인회계기준

- 1970년 일본 정부는 「일본사학진흥재단법」을 제정하여, 사립학교의 교육 조건과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사립학교에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적 경비를 지원하는 "사립학교경상비보조금제도"를 창설함
- 이에 따라, 1970년 「사립학교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경상비 보조금의 교부를 받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문부대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회계처리와 관련 재무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1971년, 문부성령 제18호로 학교법인회계기준을 처음으로 제정함
- 그러나 1973년 제1차 오일쇼크 이후 사립대학의 경영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국·공립대학과의 교육 조건의 격차 또한 확대되어 사학단체로부터 보조금의 추가 조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1975년 의원입법의 형태로 「사립학교진흥조성법」이 제정되고, 1976년부터 시행됨
- 1975년 새롭게 제정된 「사립학교진흥조성법」은 1970년에 제정된 「일본사학진흥재단법」을 계승하고, 사학 교육 조건의 유지 및 향상,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학교법인의 경영 건전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사립대학의 교육 연구를

위한 경상적 경비를 2분의 1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1976년 「사립학교진흥조성법」 시행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받는 학교법인은 문부과학대신이 정하는 기준인 학교법인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와 재무 계산 서류를 작성해야 함(「사립학교진흥조성법」 제14조제1항)
- 「사립학교진흥조성법」은 일본의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로서 보조금의 공평 분배와 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결산서의 작성기준으로서 문부과학성령으로 학교법인회계기준이 규정됨

○ 학교법인회계기준의 개정

- 기본금에 대한 운영과 기부금전입액과 관련된 회계기준이 명료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1983년 문부성 고등교육국에서 “학교법인재무기준조사연구협력자회의”를 설치하고, 개선작업에 착수
- 이와 관련하여 1987년 “학교법인회계기준의 개선에 대하여”라는 최종보고서를 채택하여, 학교법인회계기준 제30조 기본금에 대한 분류와 정의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개정됨
- 2005년 문부과학성령으로 학교법인회계기준 내, 사립대학 경영의 합리화, 장래계획이 재검토되는 경우, 기본금을 이입할 수 있도록 기본금의 이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함
- 2008년, 학교법인의 경영 상태를 이용자 관점에서 알기 쉽게 경영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회계기준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하여 “학교법인회계기준의 제과제에 관한 검토회”를 설치
- 2013년에 기존의 소비수지계산서를 사업활동수지계산서로 명칭을 변경하고, 활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토록 하거나, 자금수지계산서의 부속서류로 새롭게 활동구분자금수지계산서를 요구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학교법인회계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문부과학성령 제15호를 공포하고, 2015년 새로운 학교법인회계기준을 시행함

3. 일본 사립대학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제정기관

○ 일본 학교법인회계기준의 제정기관은 문부과학성(文部科學省)으로, 문부과학대신(文部科學大臣)의 문부과학성령으로 제정·공포함

- 제정 혹은 개정되어 공포되는 절차를 살펴보면, 사립대학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현장의 개정 요구 혹은 문제점을 파악한 후, 문부과학성 고등교육국에 공인회계사, 사학 경영자 등의 관련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학교법인재무기준조사연구협력자회의를 설치하고, 개선작업에 착수함
- 이후, 당 회의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기초로 검토회를 개최하고 논의를 거쳐 최종보고서가 채택되면, 문부과학성 고등교육국에 위탁되어, 최종적으로 문부과학성령으로 공포함

4. 일본 사립대학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개요

(1) 학교법인회계기준의 구성

제1장 총칙 (제1조 - 제5조)
제2장 자금수지계산 및 자금수지계산서 (제6조 - 제14조의2)
제3장 사업활동수지계산 및 사업활동수지계산서 (제15조 - 제24조)
제4장 대차대조표
　　제1절 자산 (제25조 - 제28조)
　　제2절 기본금 (제29조 - 제31조)
　　제3절 대차대조표의 기재방법 등 (제32조 - 제36조)
제5장 지사관할 학교법인에 관한 특례 (제37조 - 제39조)
제6장 유보연대형 인정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특례 (제40조)
부칙

(2) 학교법인회계기준의 일반원칙

○ 다음의 4가지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와 계산서류를 작성하도록 요구함(학교법인회계기준 제2조)

- 진실성의 원칙: 재정 및 경영 상황에 대하여 진실한 내용을 표시할 것

- 복식부기의 원칙: 모든 거래에 대하여 복식부기의 원칙에 따라 정확한 회계장부를 작성할 것
- 명료성의 원칙: 재정 및 경영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회계사실을 명확히 표시할 것
- 계속성의 원칙: 회계처리의 원칙 및 절차와 계산서류의 표시방법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계속 적용하고 함부로 이를 변경하지 말 것.

(3) 작성해야 하는 계산서류

○ 학교법인이 작성해야 하는 계산서류는 다음과 같음(학교법인회계기준 제4조).

주 계산서류	부속서류
자금수지계산서	자금수지내역표
	인건비지출내역표
사업활동수지계산서	사업활동수지내역표
대차대조표	고정자산명세표
	차입금명세표
	기본금명세표

- 계산서류에 기재하는 금액은 총액표시를 원칙으로 함(학교법인회계기준 제5조)
- 만약,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관해서는 손익계산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하고, 이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의 원칙에 따라 작성해야 함

○ 자금수지계산서

- 자금수지계산서는 매 회계연도, 해당 회계연도의 제반 활동에 대응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의 내용과 해당 회계연도의 지불자금 수입 및 지출의 전말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함(학교법인회계기준 제6조)
- 여기에서 지불자금이란, 현금 및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예적금의 요구불예금을 의미함
- 제반 활동에 대응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을 계산 대상으로 하여 차입 등으로 인한 수입과 상환에 의한 지출을 포함하여 기업회계에서의 현금흐름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

- 수입과 지출의 각 계정과목에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과 결산(실적), 양자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금액을 기재하여, 예산과 결산금액을 대비하도록 작성함(학교법인회계기준 제9조)
- 자금수지내역표와 인건비지출내역표를 부속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이는 해당 회계연도의 제반 활동에 대응하되 부문별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함(학교법인회계기준 제13조 및 제14조)
- 내역표에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부문에는 학교법인, 각 학교, 연구소, 각 병원, 농장, 연습림 등의 시설 등을 포함함

○ 사업활동자금수지계산서

- 활동구분자금수지계산서는 매 회계연도, 해당 회계연도의 교육활동, 교육활동 이외의 경상적인 활동 및 기타 활동의 총 3가지 활동에 대응하는 사업 활동의 수입과 지출의 내용을 밝히고, 기본금 편입액을 공제한 해당 회계연도의 제반 활동에 대응하는 모든 사업활동 수입 및 사업활동 지출의 균형상태를 밝히는 것을 작성 목적으로 함(학교법인회계기준 제15조)
- 사업활동자금수지계산서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활동별 수지차액을 예산과 대비하는 방식으로 기재해야 하고, 교육활동과 교육활동 이외의 경상적 활동을 합산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경상수지차액을 예산과 대비하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함. 또한 당해 회계연도의 기본금편입전 당년도 수지차액을 예산과 대비하는 방식으로 기재하고, 기본금편입액을 예산과 대비하는 방식으로 기재한 후, 당해 회계연도의 당년도 수지차액을 예산과 대비하는 방식으로 기재함(학교법인회계기준 제20조)
- 자금수지 계산과는 달리 차입에 따른 수입이나 상환에 따른 지출 등을 포함하지 않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등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와 유사함
- 수입과 지출의 각 계정과목에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과 결산금액, 양자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금액을 기재하여, 예산과 결산금액을 대비하도록 작성함(학교법인회계기준 제18조)
- 사업활동수지내역표 작성이 요구되며 제반 활동에 대응하되 자금수지 내역표와 동일하게 부문별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함(학교법인회계기준 제24조)

○ 대차대조표

- 대차대조표는 당해 회계연도 말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되고, 순자산은 기본금과 차액으로 구성함. 당해연도 말의 금액을 직전회계연도말의 금액 대비하여 기재함(학교법인회계기준 제32조)
- 학교법인의 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와는 달리 자본금 대신 "기본금"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자산을 고정자산에서 유동자산 순으로 표시되는 "고정성 배열법"을 채택하고 있음
- 대차대조표의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 내의 중요한 세 가지 과목에 대한 명세표를 요구하고, 구체적으로 고정자산명세서표, 차입금명세서표, 기본금명세표의 작성을 요구함(학교법인 회계기준 제36조)

① 자산의 평가

- 자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으로 하고, 만약 해당 자산의 취득을 위해 통상 필요한 가액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가격 금액으로 취득하거나 증여 받은 경우에는 취득 또는 증여 시에 해당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통상 필요한 가액으로 함(학교법인회계기준 제25조)
- 고정자산 중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실시하고,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사용함(학교법인회계기준 제26조)
- 유가증권이 취득가액과 비교하여 그 시가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그 회복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 시가로 평가함(학교법인회계기준 제27조)
- 금전채권에 대해서는 수취불능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취불능의 추정액을 징수불능충당금으로 설정함(학교법인회계기준 제28조)

② 기본금

- 기본금이란 학교법인이 그 제반 활동 계획에 따라 필요한 자산을 계속적으로 보유하기 위해서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서 사업 활동 수입 중 편입한 금액을 말함(학교법인회계기준 제29조)
- 학교법인은 다음 4가지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금으로 편입함(학교법인회계기준 제30조)
  - 제1호 기본금: 학교법인이 설립 초기에 취득하거나 새로운 학교를 설치 혹은 기존 학교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금액

- 제2호 기본금: 학교법인이 새로운 학교의 설치 또는 이미 설치된 학교의 규모 확대 또는 교육의 내실화 향상을 위하여 장래 취득할 고정자산의 취득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기타자산의 가액
- 제3호 기본금: 장학기금, 연구기금, 국제교류기금 등,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운용하는 금전 및 기타자산의 금액
- 제4호 기본금: 항상 보유해야 할 자금으로서 별도로 문부과학대신이 정하는 금액(소정의 운전자금의 유보를 의무화한 금액)

- 그러나 학교법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금을 소각(이입)할 수 있음(학교법인회계기준 제31조)
  - 각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한 경우, 그 폐지한 활동과 관련한 기본금의 편입액
  - 경영합리화 때문에 제1호 기본금에서 규정한 고정자산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된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가액
  - 제2호 기본금에서 규정하는 금전 및 그 밖의 자산을 장래 취득할 고정자산의 취득에 충당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그 금전 및 기타자산의 가액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관련된 기본금 편입액

○ 기타
-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로부터 경상비 보조금을 교부받는 학교법인은 학교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계산에 관한 서류를 관할청에 신고, 제출해야 하며,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함

(4) 학교법인회계기준의 특징

○ 첫째 특징은 사업활동수지계산서를 통해 학교법인의 재정적 여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점
- 사업활동수지계산서는 매 회계연도, 해당 회계연도의 교육활동, 교육활동 이외의 경상적인 활동 및 기타 활동의 3가지 활동에 대응하는 사업 활동의 수입 및 지출의 내용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해당 회계연도에 기본금에 편입되는 금액을 공제한 당해 회계연도의 제반 활동에 대응하는 모든 사업 활동 수입 및 지출의 균형상태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학교법인은 영리법인이 아니므로 이익분배의 기초가 되는 손익계산은 불필요하나, 자금수지와는 별도로 각 사업활동별 수입과 지출의 균형성 여부, 건전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익계산과 유사한 사업활동수지를 계산하도록 하고, 기본금편입전 수지차액을 제시하도록 하여, 자금의 여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두 번째의 특징은 자금수지계산서와 사업활동수지계산서의 경우, 예산과 결산, 양자 간의 차이를 대비하는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예산을 공개한다는 점

- 일반 기업과는 달리 학교법인의 대부분 수입이 학생으로부터의 등록금이나 수업료,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로부터의 보조금으로 조달되기 때문에 자금의 낭비를 예방하고, 본래의 목적에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예산과 결산(실적)을 대비하는 양식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제3절 한국회계기준원

1. 설립취지

○ 한국회계기준원(Korea Accounting Institute)은 우리나라 기업회계와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통일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999년 9월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에서 설립한 독립된 민간기구임

2. 설립근거

○ 2000년 7월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 회계처리 기준의 제정, 개정, 해석, 질의회신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함

-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회계기준위원회(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이하 KASB라 함))를 두고 있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은 회사의 회계처리와 감사인의 회계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회계처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 법인 또는 단체(이하 "회계기준제정기관"이라 한다)에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기준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8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기준제정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⑦ 회계기준제정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분담금) ①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그 증권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은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3. 5. 2.>

1.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2. 회계처리기준의 해석
3. 회계처리기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4. 그 밖에 회계처리기준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② 한국회계기준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계처리기준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3. 5. 2.>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한국회계기준원은 매년 총지출 예산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전 2개 사업연도 총지출 예산액이 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분담금의 8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국회계기준원의 해당 사업연도 총지출 예산과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자체수입(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말한다)을 뺀 금액을 지원한다.

⑤ 한국회계기준원은 제4항에 따른 지원금이 감소하는 등 재정상 어려움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3항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방법, 지급 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처리기준과 관련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3. 관장하는 회계기준 종류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에서 국제회계기준을 근거로 제정·개정한 회계기준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함.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함

○ 일반기업회계기준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개정한 회계기준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적용해야 하는 회계기준임

○ 중소기업회계기준

- 「상법」 제4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회계기준임
-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른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함. 다만, 회사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비영리조직회계기준[23)]

- 2017년 비영리조직이 사회적 보고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비영리조직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여 활발한 기부문화를 끌어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부응하기 위해 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기준임

23)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및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경우, 공익법인회계기준을 2018년 이후 적용함

- 비영리조직의 재무보고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정보수요를 공통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기본 '정보'를 체계적이고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2017년 7월 20일 제정 의결되었으며,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도 가능했음. 그러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회계기준이 아니므로 실제 적용은 비영리조직의 자발적 선택에 따름

4. 수행역할

○ 2000년 7월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 회계처리 기준의 제정, 개정, 해석, 질의회신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함
-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회계기준위원회를 두고 있음

○ 회계기준 제정·개정 업무 :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규절차에 따라 질 높은 회계기준을 제정 및 개정
- IFRS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한국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필요시 국제 공조를 추진함
- IFRS 제정·개정 발표 일정을 고려하여 관련 IFRS(보험, 리스 등)가 국내에서 적시에 채택될 수 있도록 K-IFRS 제정·개정작업을 차질 없이 수행함
- 수정된 '번역 원칙', '회계기준 용어와 문장 정비 방안'과 '정비 용어 목록'을 향후 제정·개정 K-IFRS(해석서 포함)에 제공함
- 외부에서 지적된 잠재적 이슈별로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정이 필요한 경우 정규절차에 따라 개정을 추진함
- 일반기업회계기준 내의 상충 해소, 규정의 미비점 보완, 불명확한 규정의 명확화를 위해 좁은 범위의 개정사항이 식별되는 경우 연차적으로 개선을 추진함

○ 영향분석

-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준 제·개정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회계기준이 확정되기 전에 영향을 고려하여 의견을 반영하고 회계기준 확정 후에는 회계기준의 원활한 적용을 지원하고자, 회계기준의 제·개정시 영향분석을 필수적인 절차로서 수행함

○ 회계기준 실무 적용지원 : 기업 등의 예상수요에 맞추어 회계기준의 원활한 실무적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회계기준의 실무적용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을 기업, 감사인 등과 공유함

○ 연구 : 한국회계기준원은 국익을 반영할 수 있는 국제회계기준 제정 및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실질적 기여를 위해 다양한 연구 활동을 수행함

- 한국의 IFRS 도입 5년 : 성과와 과제 연구
- IFRS의 가능성 용어에 대한 전문가 판단 연구
- 호주회계기준제정기구(AASB)와 공동연구로서 각국의 회계환경, 문화적 차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IFRS 번역 이슈를 검토하여 IASB의 회계기준 제·개정 활동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함
- 회계기준의 제·개정 관련 연구 : IFRS 제·개정에 따른 영향분석, IASB의 회계기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예 : 외화환산, 동일지배거래, 지분법 등), 회계기준 제·개정에 따른 효익과 비용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함
- IFRS Research Forum : 관련 연구를 장려하고, 증거에 기반한 회계기준 제정에 연구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한국회계학회와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하고 선정된 논문에 대해 연구지원금을 지급함
- 국내 현안과 관련된 기초 연구를 수행하며, 기존 연구가 미진한 연구 분야의 연구를 선도적으로 추진함

○ 교육 : 기업의 회계역량을 제고하고 회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개념체계 기반의 원칙중심 교육으로 회계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한국의 회계투명성 개선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회계교육 서비스를 제공함

- 회계기준 제정·개정 교육
- 개념체계 기반 회계교육
- KAI-e(온라인) 교육
- 경영진 회계교육
- 회계교육통합지원시스템 운영

○ 국제활동 : 국제단일회계기준 제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제활동을 수행함
- 다른 나라 회계기준제정기구(FASB, EFRAG 등)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공동 관심사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함
- 12개 주요 국가 및 지역연합의 회계기준제정기구로 구성된 IASB 자문기구인 회계기준자문포럼(ASAF)[24]에 참여하여 IASB의 IFRS 제.개정 과제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한국의 회계현안을 아젠다로 제안하고 비중 있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
- 아시아, 오세아니아 회계기준제정기구(AOSSG)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AOSSG의 국제역량을 높이는 데 노력함
- IFRS재단의 지배구조, IASB, 자문기구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인사를 지원함 : 회의 안건 검토, 회의 배석 등

5. 조직구성

○ 한국회계기준원은 임원으로 원장과 상임위원이 있으며 조사연구실의 전문직원으로 구성됨

○ 원장은 내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선기준에 적합한 인사를 대상으로 원장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회원총회에서 선임함
- 인선기준 : 국제적 자격과 경험, 독립성과 전문가적인 자세, 업무수행능력

24) ASAF :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Forum(국제회계기준 제·개정을 지원하는 공식 자문기구) 2018년 10월 ASAF의 새로운 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음

○ 원장추천위원회

- 13개 회원기관(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한국회계학회, 코스닥협회) 중 기업대표 1인, 금융대표 1인, 금감원 부원장,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한국회계학회 회장, 현직 원장 등 6명으로 구성됨

○ 회계기준위원회는 원장, 상임위원과 7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됨

○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원장, 상임위원과 5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됨

○ 2023년 11월 현재 조사연구실은 실장 외 7개팀 45명으로 구성됨

- 질의회신센터는 10명으로 구성됨
- 금융회계팀 6명으로 구성됨
- 국제협력팀 5명으로 구성됨
- 기획전략팀 2명으로 구성됨
- 지속경영지원센터는 12명으로 구성됨
- 관리팀은 8명으로 구성됨
- KAI 연구센터 설립준비위원회 2명으로 구성됨

○ 2023년 11월 현재, 조직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고려하여 실무계와 학계간에 다음과 같이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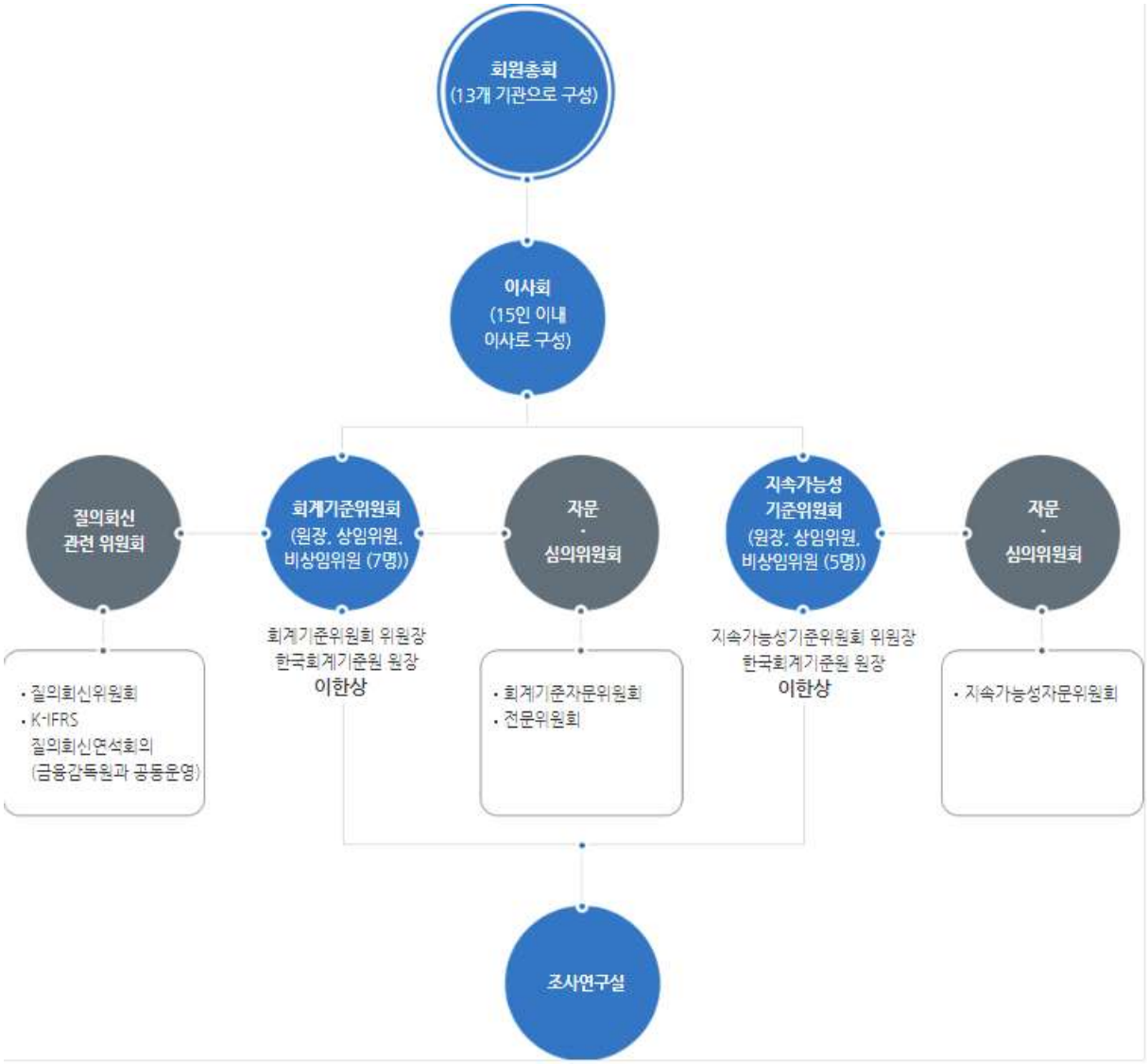

<그림 5> 한국회계기준원 조직도

6. 예산

○ 한국회계기준원의 예산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6항내지 동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규정에 근거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회계처리기준)

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2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8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기준제정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 등)

④「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분담금의 8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국회계기준원의 해당 사업연도 총지출 예산과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자체수입(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말한다)을 뺀 금액을 지원한다.

○ 금융감독원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2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은 발행수수료 분담금의 8%에 해당하는 지원금(분담금) 및 13개 회원사의 출연금으로 예산을 조달하고 있음

- 분담금 중 30%는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으로 처리함
- 분담금은 2015년 이후 5%에서 8%로 상향 조정됨

(단위 : 천원)

구 분	9기(2007년)	13기(2011년)	18기(2016년)	23기(2021년)	24기(2022년)
회원출연금수익	1,850,000	1,178,000	1,186,000	1,021,600	1,021,600
법정분담금수익	775,385	2,493,610	3,728,911	2,891,815	4,379,000
기타수익	0	0	4,050	2,485,831	4,407,891[25]

25) 기타수익 중 IFRS재단 기부수익은 국제회계기준(IFRS) 전면 도입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의 직접적인 사용자

[2022년 감사보고서 일부]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
운영성과표
제24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23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천원)

	제24기		제23기	
제약없는순자산의 변동				
사업수익		**9,808,495**		**6,399,251**
고유목적사업수익	**9,808,491**		**6,399,246**	
회원출연금수익(주석4)	1,021,600		1,021,600	
법정분담금수익(운용)(주석5)	4,379,000		2,891,815	
법정기금전입수익(주석5)	1,799,155		1,799,155	
IFRS재단 기부수익(주석9)	2,303,930		488,485	
이자수익(주석5,9)	304,806		198,191	
수익사업수익	**4**		**5**	
연구용역수익	-		-	
이자수익	4		5	

- 고유목적사업수익은 회원들이 회원총회에서 합의한 결과 납부하는 회원출연금수익과, 법정분담금수익이 주된 수익이며, 이외 수익사업수익은 미미함

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2007년부터 회계투명성이 우수하고 회계분야에 모범이 되는 초우량기업과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모금을 통해 국제회계기준재단에 재정 지원하기 위해 받은 금액임

7. 연혁

2023	03 월	제9대 이한상 원장 취임
2022	12 월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5인), 지속가능성자문위원회(14인 선임)
	11 월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설치
	03 월	박세환 상임위원 연임
2020	03 월	제8대 김의형 원장 연임
2019	03 월	박세환 상임위원 취임
2018	10 월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회계기준 자문기구 ASAF(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Forum) 회원국 선정
2017	03 월	제7대 김의형 원장 취임
2016	03 월	권성수 상임위원 연임
2015	11 월	아시아 오세아니아 회계기준 제정기구 그룹(AOSSG) 의장국 선임
2014	03 월	제6대 장지인 원장 취임 권성수 상임위원 취임

<중 략>

2001	12 월	국제회계기준소위원회 발족
2000	12 월	(주)코스닥증권시장 사원으로 신규 편입 (14 사원). 김경호 상임위원 선임
	10 월	e-kasb club 서비스 개시
	07 월	회계기준제정업무 수탁(외부감사법 시행령 제7조)
	01 월	회계처리기준제정 민간법인에 위탁근거 신설 (외부감사법 제5조)
1999	09 월	사단법인 한국회계연구원 개원, 회계기준위원회 발족
	08 월	금융감독위원회의 설립허가 및 법원 등기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5인), 회계기준자문위원회 위원(20인) 선임
	06 월	13개 사원단체 창립총회 개최. 초대 김일섭 원장, 조장연 상임위원회 선임
1998	10 월	정부와 IBRD 사이에 독립된 민간 회계기준제정기구 설립 합의
	05 월	독립적인 민간 회계기준제정기구의 창설 제안 (회계제도특별위원회)
1997	06 월	회계기준제정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제안 (금융개혁위원회)

제4절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1. 설립취지

○ 정부는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2007년 10월 「국가회계법」을 제정하였으며, 2009년 2월 「국가회계법 시행령」을 공포하였음. 계속하여 2009년 3월에 국가회계법과 시행령의 세부규칙인 국가회계기준을 제정함

- 2009년~2010년 동안 국가회계기준에서 위임된 세부 실무회계처리준칙인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 재정운영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 융자회계처리준칙, 원가계산준칙 등을 마련
- 국가회계법령 및 회계처리지침 등이 마련됨에 따라, 국가회계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국가회계 관리자의 역할이 필요

○ 국가회계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2010년 국가회계기준센터 설립

2. 설립근거

○ 기획재정부는 국가회계 관리자의 역할을 민간 국가회계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가회계법」 제11조제4항 및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설립근거를 마련함

「국가회계법」 제11조(국가회계기준) ①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이하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2. 31.> ② 국가회계기준은 회계업무 처리의 적정을 기하고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객관성과 통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8. 12. 31.>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2조의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이하 이 조에서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국내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2.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업무
3. 국가회계기준 개선을 위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결산보고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분석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기획재정부는 2009년 하반기부터 국가회계기준센터의 설립을 준비

- 2010년에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국가회계기준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예산소요를 반영
- 2010년 3월에 발표된 <표 3>의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추진계획"에 국가회계제도 인프라 구축방안으로 국가회계기준센터 2010년 하반기에 설치가 포함됨

○ 기획재정부는 전문기관에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입찰공고(2010년 4월 23일~5월 4일), 제안서 마감(2010년 5월 4일), 평가위원회 평가(2010년 5월 7일)를 거쳐 2010년 5월 11일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위탁기관으로 선정

-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설립 준비과정을 거쳐, 2010년 7월 26일에 국가회계기준센터 설립

<표 5>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로드맵

	국가회계 운영시스템 정비	국가회계 인력 전문성 제고	국가회계제도 인프라 구축
2010	■ 사회기반시설 실사 ■ 연금 등 충당부채 회계처리 방안 검토	■ 회계직렬 공무원 신설을 위한 법·제도 정비 ■ 회계결산 지원단 구성 및 운영	■ 국가회계기준센터 설치 ■ 재무제표 사전검증 제도 도입방안 검토 ■ 회계사시험과목의 정부회계내용 반영추진
2011	■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분석기법 개발 ■ 사회기반시설 가격평가 ■ 연금 등 충당부채 회계처리 방안 마련	■ 회계담당공무원의 능력제고 및 사기진작 방안 마련	■ 재무제표 사전검증 제도 마련 ■ 국가회계 전문자격 인증제도 도입
2012	■ 2011회계연도 국가 재무제표 국회제출	■ 회계직렬 공무원 선발	■ 회계사 시험과목의 정부회계내용 반영 ■ 회계법인에 대한 국가회계 전문성 강화제도 도입
지속 추진 과제	■ 중앙부처, 전문가, 언론·국민 등에 대한 국가회계 홍보 강화 ■ 회계담당 공무원의 국가회계 맞춤형 교육 실시		

자료 : 기획재정부·국가회계기준센터, 국가회계제도 개혁 백서, 2012, p.159.

○ 2010년 7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 부설 '국가회계기준센터'로 설립되어 출범한 후, 2014년 1월 국가회계에 관한 전문성 축적 및 체계적 연구를 위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로 기능 이전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3. 수행역할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국가 재정부문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 시에 국가회계분야의 전문성, 회계인프라 구축능력, 조직경영 능력 및 국제화 역량 등이 요구되었음

- 첫째, 국가회계 분야의 전문성으로 국가회계기준 등 국가회계에 대한 법령·제도의 이해도, 회계 전문인력의 확보 능력, 소속 구성원들의 회계관련 조사 및 연구역량, 회계전문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능력
- 둘째, 회계인프라 구축능력으로 국가회계기준 및 회계정보 관련 검토 역량, 회계관련 자문 및 컨설팅 능력과 회계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 실적이 뒷받침되도록 하였음. 특히, 국가 재정정보에 대한 다양한 재정지표 등 재정분석기법을 개발함으로써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셋째, 조직경영 능력으로 효율적 조직구성 및 운영능력, 조직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실적 및 계획, 국내·외 회계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포함하도록 함
- 넷째, 국제화 역량으로 국제회계분야의 전문인력 확보 및 연구 능력, 국제회계기준(IFRS)에 대한 업무 전문성 및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등 국제회계기구와의 교류 및 협조 능력을 갖추도록 함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국가회계에 관한 혁신적 아이디어의 확산, 국가회계운영시스템 정비 및 인프라 구축, 국가회계 정보 전달 과정에서 중간연결자의 역할,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국가회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국가회계와 지방자치단체회계의 상생 발전방안 연구
- 정부기능분류(COFOG(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의 체계적 고찰
- 정부 재정사업의 원가정보 활용방안 연구(영유아 양육지원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 주요 5개국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연구

- 발생주의 재정지표를 활용한 국가 재무정보 분석(알기 쉬운 재정통계[26])
- 국가회계편람[27]
-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영역별) 등[28]

4. 조직구성

○ 국가회계기준센터의 조직(안)(2010년 설립시)

- '국가회계기준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제안요청서'에 의하면, 국가회계기준센터의 조직(안)은 공인회계사 16명 수준으로 인력을 운용하며, 센터장 및 3개팀(국가회계기준팀, 평가분석팀, 국제협력팀)으로 구성됨

<표 6> 국가회계기준센터 조직(안)(2010년 설립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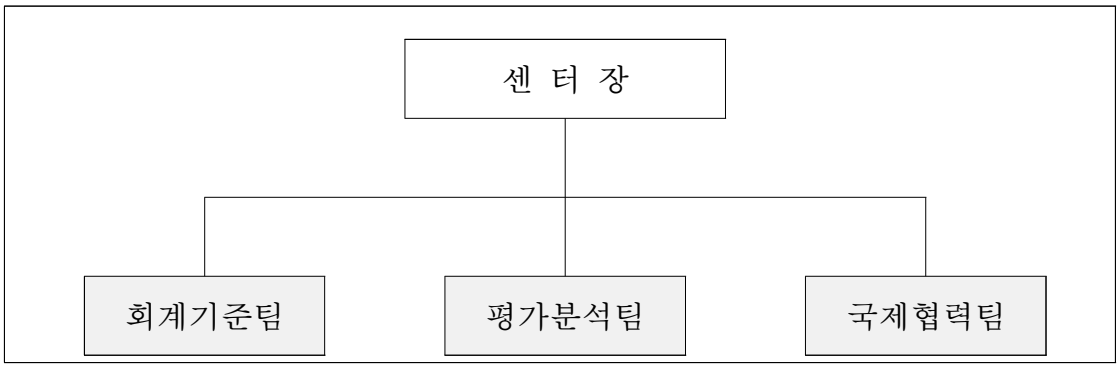

자료 : 기획재정부, 국가회계기준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제안요청서, 2010, p. 2.

- 국가회계기준팀은 국가회계기준 및 회계처리지침 등에 대한 실무해석, 질의회신 검토, 국가자산·부채 회계처리방법 검토 등을 수행함
- 평가분석팀은 국가 재정정보 검증체계 구축 및 관리, 국가회계관련 통계분석, 재정분석기법 개발 등의 업무를 맡음
- 국제협력팀은 외국정부회계제도(미국, IPSAS(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등) 동향분석, 국가회계실무교육 지원 및 발생주의 국가회계 홍보 등을 수행

26) 국가 재정통계를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2016년 초판을 발행한 후 매년 제정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발행하고 있음
27) 국가재무제표의 작성자 및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2014년 처음 발간 이후 매년 제정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발행하고 있음
28) 이외에도 2020년「알기쉬운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발간함으로써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음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조직(2023년 11월 현재)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23년 11월 현재, 국가회계기준과 관련한 주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회계팀(5명), 결산교육팀(8명), 재정통계팀(12명)과 국가회계연구TFT 1팀(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인원은 센터소장, 부소장, 선임행정원 등을 포함하여 총 31명임[29)]
- 2개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함
- 국가회계자문위원회[30)] : 국가회계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 공공재무통계자문위원회 : 재정통계 및 공기업·준정부기관·공익법인 회계기준 등에 관한 사항 자문

센터운영 규정 제9조

① 각 자문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

② 비상임 원칙

③ 소장이 추천하고 원장이 위촉

1. 기획재정부 및 감사원 5급이상 공무원,
2. 한국회계학회, 한국정부회계학회, 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회계학전공 교수 및 공인회계사
3. 국내외 국가재정 및 공공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자료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

29) 2010년 설립시 16명에서 2016년 24명 => 2023 현재 31명

30) 2023년 4월 16일 제31차 국가회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23년 1월 26일 제30차 국가회계자문위원회는 정부위원 1명, 민간위원 8명 및 해외위원 3명으로 구성됨을 확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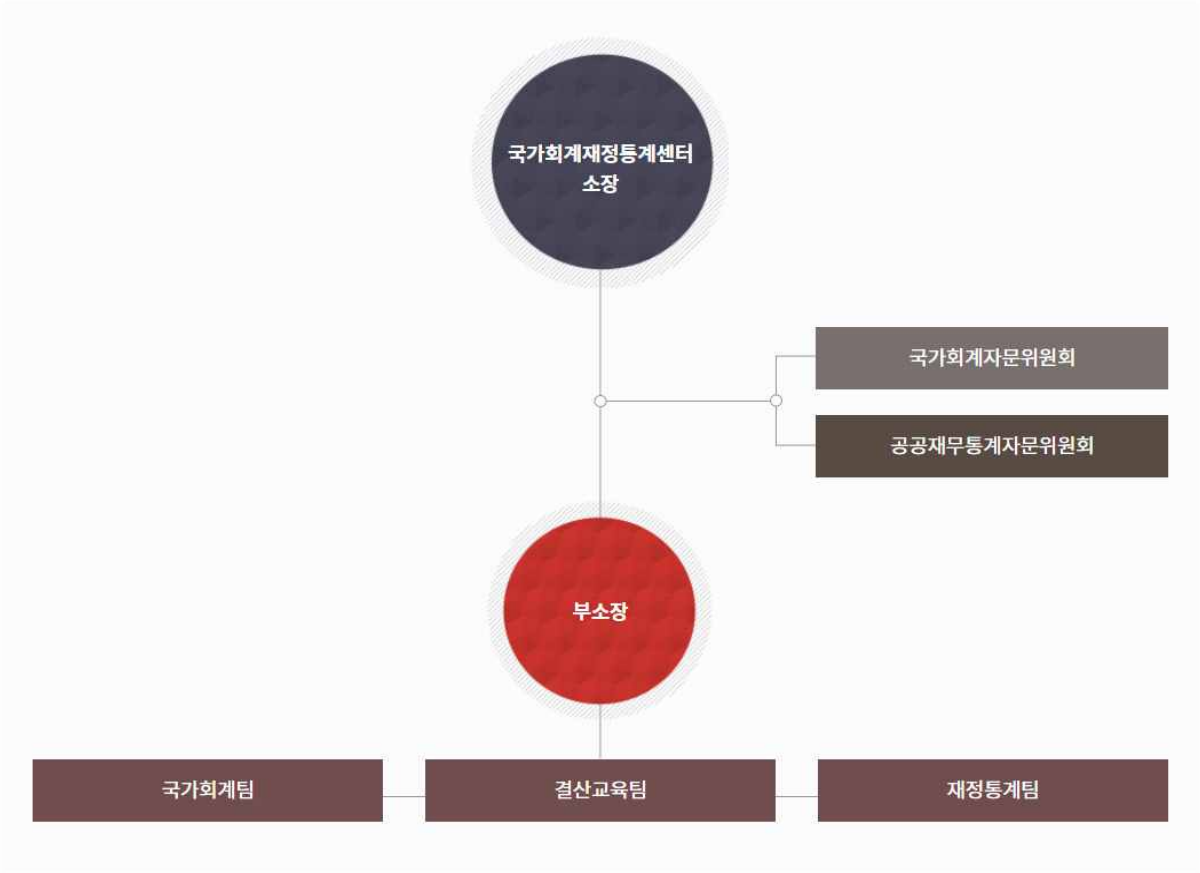

<그림 6>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조직도(2023년 11월 현재)

○ 국가회계팀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발생주의 회계제도 관련 국제협력,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등을 수행

[국가회계팀 해당 업무]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 국가회계기준 제정 및 개정방안 연구 - 실무해석 및 질의회신
발생주의 회계제도 관련 국제협력	-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B) 제·개정 동향 파악 및 국내외 회계기준 비교 분석 - 해외 회계기준 제정기구 및 발생주의 관련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 발생주의 재무정보 활용방안 연구 -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 결산교육팀은 국가재무결산 지원, 국가회계 교육을 수행

[결산교육팀 해당 업무]

국가재무결산 지원	- 기금·중앙관서 결산보고서 검토 및 회계처리 이슈 대응 - 국가재무제표 작성 지원 - 감사원 및 국회 대응 지원 - 재무결산 중간점검 지원, 결산작성지침 작성 지원 등
국가회계 교육	- 국가회계 교육커리큘럼 및 콘텐츠 개발 - 국가회계 전문교육 운영 - 재무결산담당자 워크숍 개최 - 찾아가는 국가회계교육 운영

○ 재정통계팀은 재정통계 산출, 공공기관 결산지원, 공익법인회계기준[31]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재정통계팀 해당 업무]

재정통계 산출	- 01GFS[32] 기준에 따라 일반정부 재정통계 산출 - PSDS[33] 기준에 따라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 - 주요국 재정통계 동향 분석 - 재정통계 작성 관련 교육
공공기관 결산지원	- 공기업 통합결산서 작성 - 준정부기관 통합결산서 작성 - 결산 관련 질의회신 - 공기업·준정부기관결산교육
공익법인회계기준	- 공익법인회계기준 연구 -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해석 및 질의회신

31)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의4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2016년 법 개정 후 2017년 12월 7일 제정 고시됨.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대한 질의회신 및 실무해석 등을 수행하고 있음

32) 01GFS : 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_IMF

33) PSDS : Public Sector Debt Statistics_IMF

5. 예산

○ 국가회계기준센터의 설립시 2010년 예산

- 국가회계기준센터가 설립되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소속되었던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매년 위탁사업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함
- 2010년 기획재정부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공고한 내역

<표 7> 국가회계기준센터 운영에 관한 입찰공고문

[나의공고 관리] 공고점하기

입찰집행 부가정보	PQ심사결과조회 TP심사결과조회 지명경쟁자료조회 실적경쟁자료조회 과업설명참가조회
신청서/입찰서 제출	실적심사신청 적격심사신청 과업설명참가신청 공동수급협정서제출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	게시일시	2010/04/23 18:46
입찰공고번호	20100430615 - 00	참조번호	기획재정부 2010-20호
공고명	국가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조사 등을 위한 국가회계기준센터 설치 및 운영 (긴급공고)		
공고기관	기획재정부	수요기관	기획재정부
입찰방식	직찰	낙찰방법	공고서 참조
계약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용역구분	일반용역	발주계획번호	5-991-2010-1051000-000012
재입찰	재입찰 없음		
국내/국제 입찰사유	기타(대상기관이지만 기타사유로 제외)		
WTO품목번호			
입찰자격	공고서 참조		
관련공고			

자료 : 조달청 나라장터, 2010.

- 국가회계기준센터가 설립된 2010년의 입찰공고 액수는 12억이었으나, 낙찰금액은 약 10억원으로 한국공인회계사가 위탁사업자로 선정됨
- 주요 구성원이 공인회계사이었으므로, 업계의 공인회계사 보수 대비 80% 선에서 인건비가 책정됨
- 국가회계기준센터 설립 당시, 전체 사업비 중 70% 정도가 인건비[34)]

34)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김은영 팀장과의 e-mail 인터뷰(2016.4.19.)

<표 8> 국가회계기준센터의 2010년 예산 세부 내역

□ **예산총액 : 1,071백만원(VAT 97백만원 포함)**

□ **인건비 : 699백만원**

- ㅇ 소장(비상근) : 1인 × 10백만원 = 10백만원
- ㅇ 경력회계사(12인) : 12인 × 80백만원 × 7/12월 = 560백만원
- ㅇ 수습회계사(3인) : 3인 × 50백만원 × 7/12월 = 88백만원
- ㅇ 행정인력(2인) : 2인 × 35백만원 × 7/12월 = 41백만원

□ **사업비 : 70백만원**

- ㅇ 워크샵, 세미나 관련 경비 : 24백만원
  - 충당부채 공청회, 국가회계 워크샵 개최 등
  - 사회기반시설, 연금충당부채 TFT 운영
  - 추가회계처리지침 관련 워크샵
- ㅇ 자문료 및 회의관련 경비 : 15백만원
  - 자문위원회 수당 및 외부전문가 자문료 등
  - 업무추진비(회의 참석자 식대)
- ㅇ 자료발간 및 서적구입비 : 22백만원
  - 국가회계기준센터 보고자료 인쇄비
  - 공공부문 국내·외 서적구입비
- ㅇ 국내·외 출장경비 : 9백만원

□ **운영비 : 185백만원**

- ㅇ 사무용품비 및 사무실운영비 : 13백만원
- ㅇ 사무실임차료 : 61백만원
- ㅇ 사무용장비 및 전산장비 등 : 84백만원
- ㅇ 전산개발비 : 27백만원
  - 포털사이트 개발비 등

□ **시설비(사무실 및 회의실 공사 등) : 19백만원**

자료: 국가회계기준센터, 2010, 2010년 예산 세부 내역

○ 국가회계기준센터의 2012년 예산은 24억원 규모임

- 세부 내역은 인건비(17.2억원), 워크숍 개최 등 사업비(2.5억원) 및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비(2.1억원) 등[35]

35) 기획재정부·국가회계기준센터, 국가회계제도 개혁 백서, 2012, p.183.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예산

- 국가회계기준센터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통합되기 전인 2010년~2013년까지는 국가회계기준센터의 재원은 매년 위탁사업비로 구성되어 전액 국고에서 지원됨에 따라 총 예산을 파악할 수 있었음
- 그러나 국가회계기준센터가 2014년에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통합된 이후에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 대한 출연금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경영지원실에서 관리하고 있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정확한 예산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임[36)]

6. 연혁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10년 7월 26일에 설립된 이래, 매년 학술대회 및 국가회계전문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음

36) 조세재정연구원의 감사보고서를 이용하면, 조세재정연구원의 예산 규모는 파악가능하나, 개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 대한 출연금은 확인이 어려움

<표 9>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연혁

2021	12.03	한국정부회계학회 동계학술세미나 공동주최
	11.02~03	제2회 KIPF 발생주의 국제심포지엄 「재정관리를 위한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역할」
	06.~10.	국가회계전문교육 13회 등 실시
	04.23	공공회계포럼 업무협약(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04.02	국가회계 네트워크 운영(한국정부회계학회와 연계 공동수행)
2020	12.05	한국정부회계학회 동계학술세미나 공동주최
	11.03	제1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 「공적연금 회계의 국가별 현황 및 쟁점」
	07.~10.	국가회계전문교육 13회 등 실시
	07.01	공익법인의 투명성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03.02	제4대 김완희 소장 취임

<중 략>

2009	03.19	국가회계기준 제정 및 공포
2007	10.17	국가회계법 제정

출처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

제5절 지방회계통계센터

1. 설립취지

○ 지방회계통계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회계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속으로 2016년 2월 16일 출범함[37)]

- 지자체 회계업무는 많은 업무량과 전문적인 내용으로 인해, 담당자들이 부담스럽게 여기고 제도개선도 지연됨
- 각 지자체 별로 결산 및 회계처리를 하므로, 국제기준에 맞는 일관된 재정통계의 산출이 어려움

○ 지방회계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6년 지방회계통계센터를 설립

2. 설립근거

○ 행정안전부는 2007년도 재무회계제도를 도입하였지만, 그동안 제도적인 기반이 미비하였으므로 제도 발전 및 지방재정 통계에 대한 신뢰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3조제3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2조의2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제1항에 근거하여 2016년에 설립됨

○ 설립 이후 2016년 11월 30일로 업무위탁의 근거조항이 「지방재정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이 폐지됨. 위탁업무 규정은 「지방회계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지방회계업무 전문기관 지정의 근거조항이 신설됨[38)]

○ 2023년 10월 현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지방회계법」 제13조제1항의 지방회계 관련 업무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

37) 지방회계통계센터와 더불어 ‘지방계약민원센터’도 개소함. 이 기관은 자자체를 상대로 한 계약에 대한 민원과 질의·회신을 전담하는 기능을 함

38) 2016년 5월 29일 공포된 법령으로,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법령임, 종전에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자치단체 회계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단행법으로 분리하였으며, 「국가회계법」에 대응되는 법령임

「지방회계법」 제13조(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설립경과

- 2015년 3월 지방회계통계센터 설치계획을 수립함
- 2015년 8월 지방회계통계센터 설치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함
- 2015년 9월 정관 및 직제규정을 개정함
- 2016년 2월 지방회계통계센터를 개소함(마포구 공덕동 소재, 지방재정회관 15층)

○ 설립방안

- (제1안) 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직속, 내부조직으로 설립

긍정적 측 면	○ 지방재정 공제·협력사업과 연계한 종합적인 연구가능 ○ 초기단계에서 재정공제회 인력을 활용한 조기정착 용이 ○ 초기 설립비용 부담이 줄어 듦
부정적 측 면	○ 센터의 업무와 공제회 명칭.기능과의 조화 여부 ○ 내부 전보인사 등으로 전문성 축적, 연구기능 발전 저해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와 대등한 전문적, 차별성 있는 연구 곤란

- (제2안) 지방재정공제회 부설/직속기관으로 설립

긍정적 측 면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와 대등한 협력 및 경쟁 관계 확보 ○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연구업무 수행에 전념 가능 ○ 대외관계에서 공제회 사업기능과 분리한 신속한 추진 가능
부정적 측 면	○ 센터 인력.조직, 예산 확보에 장시간 소요, 조기정착 애로 ○ 공제회와 별도로 사업수행 및 재원조달체계 관리 필요 ○ 센터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및 회원의 별도 승인 필요

⇒ (제1안) 채택 : 내부조직으로 설치 시, 조기정착 및 원활한 사업수행 가능

- 지방회계통계센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속 기관으로 4부 정원 13명(센터장 1명, 각 부서 3명), 현원 10명으로 규모로 출범

3. 수행역할

○ 지방회계통계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지원을 담당함

- 정확한 통계분석과 검증으로 지방재정 혁신을 위한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도 병행할 계획임

○ 지방회계통계센터의 주요 수행역할

- 지방회계 및 재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 재무제표 작성을 통한 원가절감 및 성과관리제도의 연계방안
  - 부채감축 등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재정운용 및 지출효율화 연구
  - 발생주의 방식에 따른 지방회계처리기준 및 지침 개선 연구
  - 예산편성, 계약 등에 따른 예산집행, 물품 및 공유재산제도 연구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지원
  - 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등 자치단체 결산 지원[39] 및 보완점 연구
  - 지역재정통합통계 작성에 따른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교육재정 통계 산출 지원 및 산출결과 분석
  - 통합결산 실시에 따른 예산결산.재무제표의 연계성, 품질관리
- 국가/국제기준에 의한 재정통계 분석
  -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를 비롯한 각종 재정통계 종합분석
  - 우발부채를 포함한 통합부채 산출 관리, 재정운영 개선방안 연구
  - 국가·자치단체 간, 교육재정과의 재정통계 분석, 개선방안 연구
- 맞춤형 회계 전문교육 및 홍보
  -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통계 산출 등 맞춤형 전문교육 실시
  - 자치단체 우수사례 선정, 주민 등에 복식부기 재무회계 도입 홍보
  - 지방자치단체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사업 수행

39) 재무제표 등 자체적으로 작성할 수 없는 지자체 지원.교육 실시

○ 2016년도 설립시 주요사업 추진계획

부서명	주요 사업계획
통계관리부	• 정부재정통계(GFS) 및 공공부문부채통계(PSDS) 작성 지원 • 재정통계 산출방식 개선방안 연구 •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기준 마련
제도연구부	• 성과보고서 도입방안 연구 및 작성기준 마련 • 복식부기자산과 공유재산과의 연계방안 • 지방재정회계제도 전문가 인력풀 구축 및 세미나 개최
교육홍보부	• 지방회계 및 결산 실무교육 및 수요조사 • 지방회계통계센터 현장 홍보 • 찾아가는 현장지원단 운영
계약지원부	• 지방계약 담당자 세미나, 계약민원 컨설팅 및 방문 상담 • 지방계약 부문 전문(연구)기관 네트워크 구축 • 지방계약법령 유권해석 사례 분석

○ 2023년 10월 현재 지방회계통계본부로 명칭이 변경되어 있으며, 연구기획부, 통계관리부, 지방교육부, 계약사업부의 4개 부서로 구성되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4. 조직구성

○ 지방회계통계센터는 지방재정·회계제도 실무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4개 부서 정원 13명(센터장 1명, 각 부서 3명)으로 구성됨(출범 시점 10명)

<표 10> 지방회계통계센터 조직 및 기능(2016년 4월 기준)

< 조직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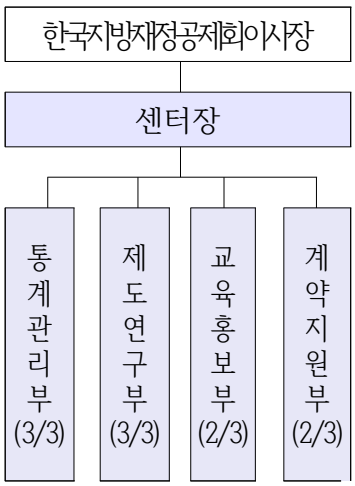

<부서별 기능>

부서	주요 업무내용
센터장	총괄
통계관리부	.지방재정통계 검증 및 관리 .통계 산출시스템 개선 지원
제도연구부	.지방회계제도 정비 및 개선 .지방재정제도 선진화 지원
교육홍보부	.공무원 회계 전문교육, 제도 홍보
계약지원부	.지방자치단체 계약업무 컨설팅, 교육

○ 2023년 11월 현재 지방회계통계본부는 본부장(1명), 연구기획부(7명), 통계관리부(6명), 지방교육부(3명), 계약사업부(7명), 총 24명으로 구성됨

- 2018년 8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내부 개편으로 2016년 출범 당시 제도연구부가 연구기획부로 개편
- 계약지원부가 계약사업부로 수행업무 확대하여 계약관련 사무업무 지원[40](지방소비세율[41] 인상으로 계약에 대한 업무 범위 학대)
  - 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제도의 연구·자문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제도 관련 위원회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의 통계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의 시공과정·시공품질 등 평가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 조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지방계약 관련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40) 「지방계약법」 제7조에 의한 지방계약 전문기관으로 2019년 5월 23일 지정 - 지방계약 전문기관 지정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5호, 2019.5.23)

41) 국세인 부가가치세수 중 지방에 배분되는 비율.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으로 최초도입시 부가가치세액의 5%에서 조금씩 인상되어 2019년 15%, 2020년 21%, 2022년 23.7%, 2023년 25.3%임

<그림 7>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조직도

○ 2023년 10월 현재 지방회계통계본부 업무는 홈페이지 배너 상단에서 확인 가능

- 지방회계센터의 수행 역할 중 하나인 '발생주의 방식에 따른 지방회계처리기준 및 지침 개선 연구' 즉, 지방회계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하기 위한 업무는 '회계·재정 연구'임
- 2023년 10월 현재, '회계·재정 연구' 관련 보고서는 다음과 같음

* 2023년 8월 1일 :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분석보고서
* 2018년 12월 31일 : 지방계약과 민간위탁 - 일본법을 중심으로 비교법적 고찰
* 2018년 12월 31일 : 지방예산 회계 용어집
* 2018년 12월 17일 : 결산정보의 유용성 제고를 위한 알기쉬운 결산서 도입방안
* 2018년 12월 3일 : 2018 지방계약 실무편람
* 2017년 12월 27일 : 미국 연방과 지방정부 회계 제도 연구
* 2017년 12월 27일 : 행사 축제 원가회계정보 공개제도 현황과 성과
* 2017년 12월 4일 :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17년 1월 26일 : 복식부기 자산과 공유재산의 차이원이 및 효율적 연계방안

- 회계·재정연구팀의 수행역할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방회계제도 연구를 목적으로 첫째, 지방회계 관련 법령 및 규정, 규칙 등의 제·개정 지원을 통해 회계제도 선진화에 기여, 둘째, 회계관련 지표 및 재정분석 기법 등의 개발을 통해 회계제도 유용성 확보임
- 그러나 지방회계처리 기준 및 지침 개선에 관한 최근 연구를 확인하기 어려움
- 지방회계 집합교육에만 중점을 두고 있음

5. 예산

○ 소요예산

- 연간 기본운영비만 15억~25억 내외로 추산됨
- 2015년은 최소인력·예산(9.9억)으로 운영하되 공제회 자체적으로 부담함
- 2016년부터 첫 3년간은 행정안전부로터 2억 5천만원의 인건비 지원을 받았음
- 5년차부터 현재까지는 공제회 자체적으로 예산을 부담함

<표 11> 지방회계통계센터 2015년도 예산(8개월분, 2015.5 ~ 12월)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비 율	산출내역
세입	계	997,829	100.0%	-
	공제회계	997,829	100.0%	· 추경편성 또는 예비비
세출	계	997,829	100.0%	-
	인건비	665,903	66.7%	· 신규채용(10명) 기준
	경비	149,526	15.0%	· 복리후생비, 행사비, 교육훈련비 등
	비품	107,400	10.8%	· 업무용 사무기기 및 사무실 집기 등
	사업비	75,000	7.5%	· 도서인쇄비, 여비교통비 등

- 센터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등은 공제회에 포함·운용[42)]

○ 추가 재원조달 방안

- 회계공무원 전문교육 및 연구용역 실시

42) 공제회의 감사보고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보고된 재무정보이며, 센터에 대한 개별 예산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센터 예산만을 따로 파악하기 어려움

제6절 국내 사례 요약 및 시사점

1. 국내 사례 요약

구 분	한국회계기준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지방회계통계센터
설립취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목적으로 1999년 9월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에서 설립한 독립된 민간기구	국가회계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2010년 국가회계기준센터 설립	지방회계통계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속으로 2016년 2월 16일 출범
설립근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국가회계법」 제11조제4항 및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2조의3	「지방회계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수행역할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기업회계기준을 제정, 개정, 해석하고 회계 및 외부감사제도와 관련한 주요제도 및 정책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기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도모 ①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개정, 해석 및 질의회신 업무 ② 회계기준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국가회계에 관한 전문성 축적 및 체계적 연구를 위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로 기능 이전되어 현재까지 운영 ① 국가회계 운영시스템 정비 ② 국가회계 인력 전문성 제고 ③ 국가회계제도 인프라 구축 ④ 중앙부처, 전문가, 언론·국민 등에 대한 국가회계 홍보 강화	지방회계통계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지원을 담당 ① 지방회계 및 재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 지원 ③ 국가/국제기준에 의한 재정통계 분석 ④ 맞춤형 회계 전문교육 및 홍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와의 교류 ③ 국제 단일 회계기준 제정을 위한 기여 ④ 회계기준의 교육 훈련과 전파 ⑤ 회계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연구·교육 ⑥ 회계 및 외부감사제도의 연구 및 국제적 심포지엄 개최 ⑦ 위와 관련된 결과물의 출판 및 배포 등	⑤ 회계담당 공무원의 국가회계 맞춤형 교육 실시	
조직구성 (인원)	2023년 11월 현재 조사연구실은 실장 외 7개팀 45명으로 구성됨 [질의회신센터(10명), 지속경영지원센터(12명), 관리팀(8명), 금융회계팀(6명), 국제협력팀(5명), 기획전략팀(2명), KAI 연구센터 설립준비위원회(2명)]	2023년 11월 현재 조세재정연구원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회계기준과 관련한 주된 업무를 담당하는 센터소장, 부소장, 선임행정원 등을 포함 총 31명으로 구성됨 [국가회계팀(5명), 결산교육팀(8명), 재정통계팀(12명)과 국가회계연구TFT 1팀(3명)]	2016년 지방회계통계센터로 출범한 후, 지방회계통계본부로 조직을 변경하였으며 2023년 11월 현재 본부장 외 4개 부서 24명으로 구성됨 [연구기획부(7명), 통계관리부(6명), 지방교육부(3명), 계약사업부(7명)]
재원	출연금(대기업, 금융기관, 회계법인 등의 출연) 및 법정부담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은 발행수수료 분담금의 8%)	정부출연금(기획재정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자체 예산

2. 시사점

○ 유관기관 도입 사례를 검토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축적해 온 사학기관 재정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학기관 회계기준원을 한국사학진흥재단 내에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

- 사학기관 회계기준원 설치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여야 함
- 사학기관 회계기준원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함
- 감독기관인 교육부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함
- 조직의 독립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조직의 전문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원의 독립성도 확보되어야 함

제4장 사학기관 회계기준원 설립·운영(안)

제1절 설립취지

○ (정책환경) 등록금 동결, 학생수 감소 등으로 사립대학의 주요 수입원인 등록금 총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필요성이 발생함. 이에 따라 재정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재정회계의 투명성이 요구됨

- 현재 사립대학결산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사립대학 예결산 실태점검, 사립대학 이월금 규모 제한 등 사립대학 재정운영 투명성 관련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투명한 사립대학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사립대학 회계기준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함

○ (사회적 환경)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사립대학 재정회계 신뢰도는 낮고, 여전히 사립대학의 재정회계 운영 부적정 사례 다수 발생

- 사립대학 재정회계 운영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 대학재정 회계분야 감사원 감사결과(2011년), 예산편성, 수입 및 지출처리, 법인 책무성 측면에서 운영 부적정 사례 다수 지적

예산편성	지출 예산 과다계상 및 수입예산 과소계상, 비체계적인 등록금 산정근거 등
수입처리	기부금 목적외 사용, 부외계좌 관리, 학교시설 사용료수입 법인계상 등
지출처리	교비회계의 타회계 전출, 근거없는 인건비성 경비 지급, 민자기숙사 관리 부실 등
법인 책무성	법정부담금 미전출, 법인부담비용을 교비에 전가,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미흡 등

- 교육부의 사립대학 재정회계 감사시 부적정 사례 지속적 지적으로 위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됨
- 국회의 계속적인 사립대학 재정회계 투명성 제고 필요 지적

○ (사립대학 재정회계 운영현실) 사립대학에 대한 외부감사 및 외부감사에 대한 감리 의무화 등으로 대학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강화되었으나, 세밀한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여 대학현장에서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특례규칙이 40여년 전에 제정된 후 부분적인 개정을 통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어서 전면적인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43)]
- 사립대학 회계처리 질의에 대한 재단 차원의 책임 있는 답변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함[44)]

. 영리기업은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제.개정, 기준해석, 질의회신 등)를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 사학기관 종합재무제표는 특례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작성되고 있지 않아 사학기관 전체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현행 회계기준의 미흡으로 회계감리 결과 회계기준 해석 차이로 인한 교육부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의견불일치가 발생함

○ (재단 내부여건) 재단의 사립대학 재정회계분석 전문기관 역할강화로 위상제고 필요

- 재단은 약 20여년간 사립대학 예결산 집계·분석·공시, 사립대학 회계처리 상담 및 교육, 사립대학 회계 실태점검 및 회계감리 등을 수행하여 사학기관 재정회계에 대한 전문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 현재 수행하고 있는 재정회계 처리 관련 특례규칙 해석, 상담, 질의회신에 대한 공신력 확보로 사전적 관점의 사립대학 재정회계 투명성 제고 필요
- 현재 유선 및 온라인채널을 통해 사립대학 재정회계처리 상담 및 자문을 시행하여, 사립대학 관계자 실무처리를 지원하고 있으나, 책임성에 제약이 있음(특례규칙의 제정·개정 및 해석은 교육부에 권한과 책임이 있음)
- 사립대학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사업의 수행을 통해 사후적 관점의 사립대학 재정회계 투명성 제고 필요

43) 영리기업 대비 회계처리기준의 재무제표 및 계정과목이 미흡하고, 재정과 회계가 혼재되어 있음
44) 회계기준 제·개정권자가 교육부지만 사립대학회계의 질의에 대한 실제 답변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수행함으로 인한 한계가 있음

○ (설립취지) 재단에서 수행하던 사립대학 재정회계분석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여 사립대학 회계기준의 제정 및 개정을 지원하는 사학기관 회계기준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학기관 회계기준원을 설립

- 기업에 관한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한국회계기준원에 비해 재단은 사학기관 회계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
- 사립대학회계기준의 합리적 제정 및 개정 지원을 통해 사립대학 재정회계에 대한 사전적 투명성 확보
- 사립대학회계기준의 적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를 통해 사립대학 재정회계에 대한 사후적 투명성 확보

제2절 설립근거 및 방안

1. 설립근거

○ 명칭

- (제1안) 사학기관 회계기준원
  - 장점 : 회계기준의 제정과 개정을 담당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함
  - 단점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회계기준을 제정하고 있는 한국회계기준원과 유사한 명칭임

- (제2안) 사학기관 회계센터
  - 장점 : 한국회계기준원과 유사한 명칭이 아님
  - 단점 : 회계기준의 제정과 개정을 담당한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음

○ 권고안

- 사학기관 회계기준의 제정과 개정을 명확하게 담당한다는 의미가 포함된 제1안을 권고함
- 한국회계기준원과 유사한 명칭이기는 하나 한국회계기준원은 법률에 '회사의 회계처리'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어 한국회계기준원의 업무에 사학기관이 포함될 수는 없음

○ 사학기관 회계기준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 사항 검토

-「사립학교법」

현 행	개정 안
제33조(회계규칙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신설>	**제33조(회계규칙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규칙과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학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현 행	개정 안
<신설>	**제14조의8(회계규칙에 대한 업무의 위탁 등)**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한다. 1. 회계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회계규칙의 해석 3. 회계규칙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4. 그 밖에 회계규칙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정하는 업무

-「사립학교법」에 회계규칙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회계규칙에 대한 업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하도록 규정함
-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업무 위탁(「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방식과 같음
-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의 위탁(「사립학교법」 제31조의2제2항,「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4) 방식과 유사함

○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 특례규칙에서 사립대학 회계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으나, 동 규칙 내용의 불완전성과 불명확성으로 인해 사립대학 회계 관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 따라서 영리법인의 경우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를 독립된 민간기구인 한국회계기준원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사립대학 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립대학 회계기준을 정비하고 관련 업무의 전문성 및 공신력을 제고하며, 나아가 사립대학 재정 및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함
- 현재 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립대학 예산 및 결산의 집계 및 사립대학 회계실태조사 기능과 연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

2. 설립방안

○ (제1안) 한국사학진흥재단 부설기관으로 설립

긍정적 측 면	○ 사학기관 회계기준 제정 및 개정 시 독립성 확보 ○ 연구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전문인력(공인회계사, 회계학박사 등) 충원을 통한 전문성 확보 ○ 연구 기능 활성화 가능 ○ 대외관계에서 재단 사업기능과 분리한 신속한 추진 가능
부정적 측 면	○ 기준원 인력, 예산 확보에 장시간 소요 ○ 재단과 별도로 사업수행 및 재원조달체계 관리 필요

○ (제2안) 한국사학진흥재단 내부조직으로 설립

긍정적 측 면	○ 기존 관련 조직 및 인력 활용 가능 ○ 재단 사업과 연계한 종합적인 연구 가능 ○ 초기 설립비용 부담이 줄어듦
부정적 측 면	○ 사학기관 회계기준 제정 및 개정 시 독립성 미흡 ○ 내부 전보인사 등으로 전문성 축적 부족 ○ 공인회계사, 회계학박사 등의 전문직 고용의 어려움 ○ 기준원의 업무와 재단 기능과의 조화 여부 ○ 연구기능 활성화 어려움

○ 권고안

- 사학기관 회계기준 제정 및 개정이 핵심 기능이므로 기준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유리한 재단 부설기관으로 설립하는 제1안을 권고함
- 현재 재단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확대·개편하는 방안이므로 현재의 인력에 기능 확대에 따른 신규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재단 부설기관으로 설립
- 사학기관 회계기준원은 재단 부설기관으로 이사장의 감독을 받아 원장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제3절 수행역할

1. 사학기관 회계기준 제정 및 개정 업무

○ 사학기관 회계기준 제정에 관한 업무

- 현재 사학기관의 회계 관련 규정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으로 나누어져 있어 종합적인 사학기관 회계기준이 제정될 필요가 있음
- 사립대학 회계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례규칙을 현재의 회계 추세 및 회계투명성 요구에 맞추어 전면적으로 새로운 사립대학 회계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전문성 부족 및 계속적인 업무 지원 미흡 등으로 이 업무를 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에서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사학기관 회계기준원에서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함

○ 사학기관 회계기준의 개정에 관한 업무
- 사학기관 회계기준의 계속적인 개정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음
- 사학기관 회계기준 개선을 위한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 사학기관 회계기준 개정 업무를 지원할 수 있음
- 현재 재단에서 담당하는 사학기관 회계기준에 관한 질의응답 업무를 확대하여 전문적이고 시의적절한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음

2. 사립대학 회계실태조사 업무

○ 사립대학 회계실태에 관한 조사 업무
- 사립대학 회계기준 적용 실태조사를 통해 사립대학에서 회계기준을 통일적으로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함
- 사립대학 회계기준 적용 실태조사를 통해 적용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기준을 개정 또는 보완할 수 있음

○ 사립대학 재정회계 통계 작성 업무
- 사립대학의 예산서 및 결산서에서 재정회계 통계를 작성함으로써 사립대학간 또는 국립대학과의 재정회계 정보 비교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음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검토

※ 사립대학 회계실태 조사 업무는 사학기관 회계기준원과 독립된 재단 내부 조직에서 수행할 수도 있으나 업무의 연관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사학기관 회계기준원 내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사립대학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

○ 회계감리 업무 수행

- 현재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사립대학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를 통해 사립대학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함

※ 사립대학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는 사학기관 회계기준원과 독립된 재단 내부조직에서 수행할 수도 있으나 업무의 연관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사학기관 회계기준원 내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4. 기타 회계 업무

○ 산학협력단 회계기준 및 회계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의 개정시 사학기관 회계기준원에서 지원할 수 있음
- 현재 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관한 질의응답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음
- 산학협력단 회계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개정 업무를 지원할 수 있음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적용 실태조사를 통해 산학협력단에서 회계기준을 통일적으로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적용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기준의 개정 또는 보완을 추진할 수 있음
- 산학협력단의 예산서 및 결산서를 기반으로 재정회계 통계를 작성함으로써 대학 산학협력단간 재정회계 정보 비교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음

○ 재외교육기관 예 · 결산 실태점검

- 현재 교육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재외교육기관 예·결산 실태점검 업무 수행

○ 대학의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업무
- 사립대학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분석
- 사립대학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분석기법 연구
- 산학협력단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분석
- 산학협력단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분석기법 연구

○ 대학 재정통계 지원에 관한 업무
-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보를 수집, 관리하여 정부 고등교육 재정지원 효율화를 도모하는 '고등교육 재정정보 분석 및 지원사업' 업무 수행

※ 사립대학 회계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기타 회계 업무는 별도의 재단 내부조직에서 수행할 수도 있고, 업무의 연관성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사학기관 회계기준원 내에서 수행할 수도 있음

5. 회계교육 및 홍보

○ 맞춤형 회계 전문교육
- 사립대학 재정회계담당자에게 발생주의 복식부기 교육 실시
- 사립대학 재정회계담당자에게 사립대학 회계기준 교육 실시
- 산학협력단 재정회계담당자에게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교육 실시
- 사립대학 재정회계담당자에게 재정통계 교육 실시
- 공인회계사에게 사립대학 및 산학협력단 회계 교육 실시

※ 사립대학 회계업무 외의 맞춤형 회계 전문교육은 별도의 재단 내부 조직에서 수행할 수도 있고, 업무의 연관성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사학기관 회계기준원 내에서 수행할 수도 있음

○ 사립대학 회계투명성 홍보
- 사립대학 이해관계자에게 회계투명성 홍보
- 홈페이지를 통해 사립대학 회계 및 재정통계 자료 제공

제4절 조직구성

○ 조직 구성(안)

- 사학기관 재정회계 분야의 회계기준 지원, 회계실태 조사, 재정정보 지원 등의 업무를 고려한 조직 구성안 마련
- 기준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유리한 재단 부설기관으로 설치
- 3개 팀으로 구성
  * [회계제도팀] 회계기준 제·개정 및 해석, 상담 및 질의회신, 회계제도 연구, 회계기준 교육
  * [회계조사팀] 사립대학 예·결산 집계 및 분석, 사립대학 예결산 실태조사 및 사립대학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검토
  * [재정통계팀] 산학협력단 예·결산 집계 및 분석, 산학협력단 예결산 실태조사, 재외교육기관 예·결산 실태점검, 대학 재정통계 집계 및 사후 분석
-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사학기관회계기준자문위원회, 사립대학 외부감사감리위원회 등 심의·자문기구 운영

○ (제1안) 한국사학진흥재단 부설기관으로 설립하여 회계제도팀, 회계조사팀, 재정통계팀을 포함함

긍정적 측 면	○ 재단 재정회계 분야 업무를 전부 담당함으로써 재정회계 분야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음 ○ 기준원 내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 필요시 타 업무도 지원할 수 있음
부정적 측 면	○ 사학기관 회계기준 업무 외의 유사 회계 업무가 포함됨 ○ 재단 인력의 상당 부분이 부설기관인 기준원으로 배치됨

○ (제2안) 한국사학진흥재단 부설기관으로 설립하여 사학기관 회계기준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계제도팀과 회계조사팀을 포함함. 재정통계팀은 재단 내부조직에서 담당함

긍정적 측 면	○ 사학기관 회계기준 관련 업무만 담당함 ○ 사학기관 회계기준 외의 업무는 현재와 같이 재단 내부조직에서 담당함 ○ 재단 인력의 부설기관 배치를 최소화할 수 있음
부정적 측 면	○ 재단 재정회계 업무가 부설기관과 내부조직으로 이원화됨 ○ 사학기관 회계기준 업무와 유사 회계 업무와의 협력과 지원이 어려워짐 ○ 기준원의 인력 풀이 작아짐

○ 권고안

- 재단의 재정회계 분야 업무를 기준원에 집중하여 전문성 확보와 유지가 가능하도록 회계제도팀, 회계조사팀, 재정통계팀을 다 포함하여 부설기관을 설치하는 제1안을 권고함
- 현재 재단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확대·개편하는 방안이므로 현재의 인력에 추가 고용하는 전문인력을 합하여 한 곳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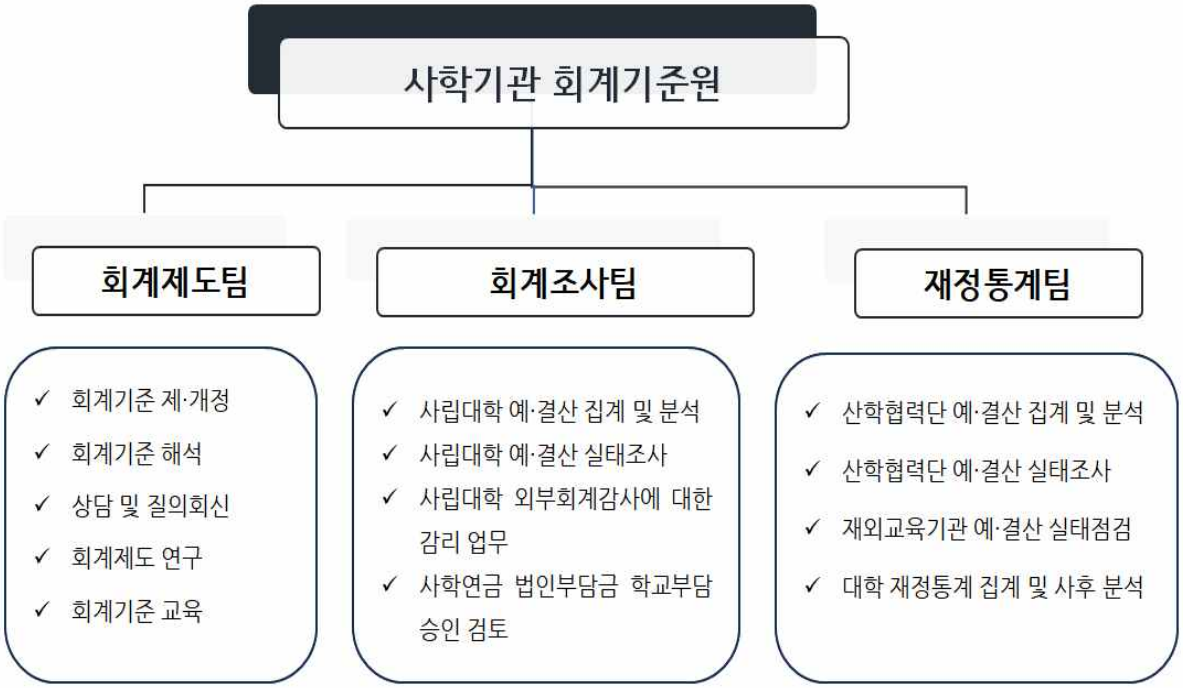

○ 인력 구성(안)

- 현재 고등교육재정회계본부는 본부장 1인, 재정통계분석부 13인, 회계조사부 12인, 총 26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고등교육재정회계본부를 확대 개편하여 공인회계사 및 회계학박사 등의 전문직을 추가 고용
- 현재의 고등교육 재정회계 관련 업무에 추가하여 사립대학 회계기준 제·개정 업무를 포함하는 점을 고려하여 총 30인의 인력 구성(안)을 마련함

- 인원 구성

구 분	인원(명)	산출근거
원장	1	▪ 사학기관 회계기준원 총괄
회계제도팀	8	▪ 팀 총괄 1인 ▪ 사립대학 회계기준 제정·개정·해석 2인 ▪ 질의·회신 2인 ▪ 회계제도 연구 2인 ▪ 회계기준 교육 1인
회계조사팀	11	▪ 팀 총괄 1인 ▪ 사립대학 예·결산 집계 및 분석 2인 ▪ 사립대학 예·결산 실태조사 3인 ▪ 사립대학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 4인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검토 1인
재정통계팀	10	▪ 팀 총괄 1인 ▪ 산학협력단 예·결산 집계 및 분석 2인 ▪ 산학협력단 예·결산 실태조사 3인 ▪ 재외교육기관 예·결산 실태점검 1인 ▪ 대학 재정 지원사업 정보 집계 및 분석 2인 ▪ 대학 시설현황, 수익용기본재산 집계 및 분석 1인
합 계	30	

제5절 예산

○ 2023년 관련 예산 : 2,923백만원

- 고등교육 재정분석 및 실태점검 사업 : 2,712백만원
- 재외교육기관 재정관리 시스템 구축 : 211백만원

○ 소요예산

- 연간 운영비 35억원 내외 추산
  * 인건비 : 24.5억원(70% 정도)
  * 사업비 및 운영비 : 10.5억원(30% 정도)

- 2025년 정부예산에 반영 추진(현재 예산에서 약 6억원 증가)
  * 사학기관 회계기준원에서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사립대학 회계기준 제정 및 개정 업무를 담당
  * 사립대학 회계기준의 제정 및 개정을 위해 공인회계사, 회계학박사 등 전문직 고용 필요
  * 사업 인력의 외부 위탁을 최소화하고 자체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사업 추진

○ 추가재원조달 방안
- 사립대학 재정회계담당자 전문교육

제6절 기대 효과,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방안

1. 기대 효과

○ 사학기관 회계기준원이 사학기관 회계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가진 전문성 있는 조직으로서 40여년 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특례규칙을 현재의 사학 환경 및 회계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사학기관 회계기준을 제정할 수 있음

○ 사학기관 회계기준의 제정 및 계속적인 개정을 통해 사학 재정회계에 대한 사전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사학기관 회계기준의 적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를 통해 사학기관 재정회계에 대한 사후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재단에서 수행하던 사립대학 재정회계분석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여 사학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재단이 보유한 사학기관 재정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학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학 재정회계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음

2.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방안

○ 재단의 현재 수준은 사학기관 회계기준의 제정 및 개정을 담당하기에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음

- 현재의 인력에 사학기관 회계기준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회계학박사, 공인회계사 등의 추가 고용을 통해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사학기관 회계기준의 제정 및 개정시 회계학교수,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음

○ 사학기관 회계기준의 제정 및 개정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교육부, 재단 임원, 사학기관의 영향으로 독립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사립학교법」에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재단 이사회 및 임원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사학기관 회계기준원을 재단 내부조직이 아닌 부설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운영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재정이 명확하게 확보되어야 함

- 사학에 대한 국가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사학기관 회계투명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사학기관 회계기준원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함

참고문헌

감사원, 2011, 대학재정 운용실태 주요 감사결과.

교육부, 2022,「사립학교법」.

교육부, 2023,「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부, 202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교육부, 2023,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국가회계기준센터, 2010, 2010년 예산 세부 내역.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2020, 알기쉬운 공익법인회계기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2023, 홈페이지(www.gafsc.kipf.re.kr).

권선국·장지영, 2021,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조화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보고서.

금융위원회, 202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202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202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2010,「국가회계기준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제안요청서.

기획재정부, 2021,「국가회계법」.

기획재정부, 2021,「국가회계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2022,「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획재정부, 202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국가회계기준센터, 2012, 국가회계제도 개혁 백서.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국가회계편람.

삼일회계법인, 2013, 사립대학 회계기준서 연구,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정미 외, 2009, 대학재정 실태와 성과 분석, 연구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조달청, 2010, 나라장터(www.g2b.go.kr), 국가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조사 등을 위한 국가회계기준센터 설치 및 운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 포커스 제2호,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 현황 분석, 2022.1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 포커스 제3호, 사립대학교 재정 운영 현황 분석, 2022.11.

한국사학진흥재단, 2022 사학기관 예·결산 및 기본재산 실태점검 사례집.

한국사학진흥재단, 2019,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한국사학진흥재단, 2022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사례집.
한국사학진흥재단, 2016, 대학재정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권선국).
한국사학진흥재단, 2017, 사학기관 회계기준에 관한 연구(연구책임자 김우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2020, 알기쉬운 공익법인회계기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2030, 알기쉬운 재정통계.
한국회계기준원, 2023, 한국회계기준원 2022 감사보고서.
행정안전부, 2019, 고시 제2019-45호, 지방계약 전문기관 지정.
행정안전부, 2023,「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2022,「지방재정법」.
행정안전부, 2023,「지방재정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2021,「지방회계법」.
행정안전부, 2018,「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FASB 홈페이지(https://www.fasb.org)
GASB 홈페이지(https://www.gasb.org/)
NACUBO 홈페이지(https://www.nacubo.org/)

Gordon, T., Fischer, M., Malone, D. & Tower, G., A comparative empirical examination of extent of disclosure by private and public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Vol 21, 2002.
Finance and Accounting for Higher Education Administrator : The information you need to be successful in non-financial roles, AACSB 2022.
Hanover Research, Financial Reporting in Higher Education, 2014.
Elaine Evans, Catriona Paisey, Histories of accounting education - an introduction, Accounting History, Vol. 23(1-2), pp. 3~13, 2018.
Treba Marsh, FASB/GASB Recognition and Reporting Differences: A Nonprofit Sector Perspective, 2011.

文部科学省令 第18号,“学校法人会計基準”, 2023年.
石渡朝男,“学校法人における会計基準 成立過程・特性・役割と課題”, アルカディア学報, No. 457, 私学高等教育研究所, 日本私立大学協会, 2011年.
林 雅之, 小野田晴美,“学校法人会計基準に関する一考察 ― 国立大学法人会計基準との比較において”, 金沢星稜大学論集, 第43巻 第2号, 2009年.
文部科学省 高等教育局私学部参事官室,“学校法人会計基準の改正について-省令編”, 2015년年. (발표자료)
金野 綾子, 文部科学省 高等教育局私学部参事官(学校法人担当),“学校法人会計基準について”, 2020年. (발표자료)
東京高等教育研究所,“学校法人会計基準に代わる新会計基準への提言,” 2023年 6月 29日. (발표자료)